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

정재황



지역법제 연구 15-16-④-5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프랑스-

정재황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프랑스-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France-

연구자 : 정재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eong, Jae-Hwang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웹 3.0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하며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적자유 행사를 위한 기본권 보장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사항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는 프랑스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되, 특히 프랑스 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해설과 심결례에 대한 참조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주요내용

- 정보청구권자, 정보공개 의무자 및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 및 이해관계인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사적 정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고, 정보공개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해왔다.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정보공개위원회(CADA)에 이의제기를 한다. 위원회에의 이의제기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이다
-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화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분석도 이 연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에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프랑스와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정보공개위원회는 전문적인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중요한 심결례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고율이 매우 높은 바, 이는 구체적 사안으로서 참조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 프랑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책임관, 공공정보의 재이용

Abstract

I . L'Objet de la Recherche

- La nécessité partagée en Corée de devoir mieux garantir le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à tous les citoyens invite à examiner l'exemple d'autres pays qui connaissent les dispositions en la matière.
- Depuis la cré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le législateur français s'engage toujours à améliorer le régime concerné. Dans ce contexte, la mise en vigueur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est prévue le 1^{er} janvier 2016.
- Cette étude vise à analyser la législation française relative à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n se référant surtout aux avis de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II. Le Contenu Principal

- Le demandeur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Le droit à communication s'entend à toute personne.

- L'étendue du droit à communication

Le droit d'accès s'applique à tous les documents, quels qu'en soient la forme et le support, que produisent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mais aussi aux documents qu'elles reçoivent des personnes privées. En revanche, ce droit s'exerce dans certaines conditions. En outre, la loi prévoit les documents non communicables ainsi que les documents communicables aux seuls intéressés. L'étendue des documents communicable continue à se modifier par la CADA et le Conseil d'Etat.

- L'exercice du droit à communication

Les modalités de communications sont au choix du demandeur. En cas de refus de communication, le recours devant la CADA constitue un préalable obligatoire à tout recours contentieux.

-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La loi impliquait un principe d'interdiction de la réutilisation à des fins commerciales. Cependant, depuis 2005, la loi prévoit la possibilité de réutiliser librement les informations publiques.

- L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En 2005, a été mis en place un nouveau réseau. C'est l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Cette création répond à trois objectifs principaux : 1) faciliter l'instruction des demandes ; 2) apporter une expertise juridique ; 3) assurer la liaison avec la CADA.

III. L'Intérêt de l'Etude

- On s'attend que cette étude comparative avec la France permettra aux acteurs coréens en question d'établir un meilleur système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au public.

➤ **Mots-Clés** :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le droit à communication,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personne responsable de l'accès aux documents,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 2 절 전제적 고찰	16
1.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의 기초와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16
2.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의 변천	17
3. 새로운 상황 - 디지털시대	18
4. 논의의 중추 범위와 참조대상	20
제 2 장 현행 프랑스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이해	21
제 1 절 정보공개법 개관	21
1. 기명정보의 문제	21
2. 광범위한 대상성	22
3. 공적 기록물의 등재와 정보공개청구	23
4. 문학적·예술적 저작권의 보호	23
제 2 절 공개대상 정보	24
1. 형 태	24
2. 정보보유기관	26
3. 공공서비스 수행과의 관련성	29
4. 공개의 제한	29
5. 기타 정보	35

제 3 절	청구인과 공개주체기관	37
1.	청구인	37
2.	공개주체기관	38
제 4 절	비공개사유와 사적정보	39
1.	비공개사유	39
2.	사적정보	51
3.	분리공개	54
4.	열람(조회)	54
제 5 절	지침·훈령 등, 행정청의 공간(公刊)	55
제 6 절	청구와 공개의 방식	55
1.	청구의 방식	55
2.	공개의 방식	56
3.	비 용	57
제 7 절	공개의 시한과 남용방지	58
1.	공개의 시한	58
2.	남용방지	58
제 8 절	쟁송절차	59
1.	개 관	59
2.	정보공개위원회에의 이의제기	59
3.	행정소송의 제기	59
제 9 절	공공정보의 재활용	60
1.	재활용의 원칙	60
2.	공공정보	60

3. 적용범위	61
4. 활용조건의 특례	61
5. 행정청의 동의가 없는 경우의 재활용조건	61
6.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의 재활용	61
7. 배타적 권리의 부여 여부 문제	62
8. 수수료의 부과	62
9. 목록 및 재활용조건 등의 공개	63
10. 제 재	64
제 3 장 프랑스에서의 정보공개관리체계	65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위원회	65
1. 성격과 구성	65
2. 권한과 운영	69
3. 실적과 평가	71
제 2 절 정보공개책임관	78
1. 서 설	78
2. 임명대상 단체와 임명권자, 공개원칙 등	79
3. 정보책임관의 권한과 임무	79
제 4 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	83
제 1 절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	83
1. 긍정적 측면	83
2. 개선 내지 새 방안 모색 대상의 점	84
제 2 절 우리법예의 시사점	84

제 5 장 결 론 95

참 고 문 헌 97

<부 록>

부록 1. 프랑스 정보공개법 주요조문 109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12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 정부도 웹 3.0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 결과 1998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보다도 상당히 일찍이 프랑스는 정보공개법제를 현실화하였다.

프랑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보공개법을 거듭하여 개정해왔고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러한 개선의 변화를 참고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찾아 우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제가 상당히 자세한 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위원회(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이하에서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라고도 함)가 독립행정위원회로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이 정보공개법제의 발달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재판기관이 아니지만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이 그야말로 판례를 형성할 정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제시례는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여 우리에게도 구체적 사안으로서 참조의 효과가 크다.

정보공개법제의 비교연구에 있어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프랑스가 정보공개제도를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강조하여 왔다는 점과 프랑스가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참조가 보다 수평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이다.

제 2 절 전제적 고찰

1.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의 기초와 정보공개 청구권의 성격

(1) 기 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는 행정의 공정성의 확보라는 방향에서 뿐 아니라 행정정보공개가 행정청이 자신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공된다. 즉 여러 다양한 보조매체에 의지하거나 청구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것, 복사본을 입수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본질적 요소이다.¹⁾ 시민들에게는 또한 자신의 일정한 권리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그 취지가 설명되고 있다.²⁾ 행정정보에의 접근과 기본적 자유는 이처럼 긴밀한 연관을 유지하게 된다. 공권력과 시민들 간 관계가 불평등과 공권력의 특권으로 나타난 강한 행정의 국가에서와 다른 권리를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1978년에 인정하게 되었다.³⁾

1) 투명성을 지지하는 여론은 1978 - 1979년의 일련의 법률들을 낳게 하였다는 지적으로, Guy Braibant/B. Stirn,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7eéd., Dalloz, 2005, 467면. 1978년 법률은 본 연구에서 다룬 정보공개법이고 1979년 법률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필자 주).

2) B. Lassère/W. Lenoir/B. Stirn, *Transparence administrative*, PUF, 1987 등 참조. 그리고 <http://www.cada.fr/un-droit-qui-garantit-la-transparence%2c19.html> 에서의 정보공개위원회 해설에서의 설명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3) <http://www.cada.fr/un-droit-qui-garantit-la-transparence%2c19.html> 에서의 정보공개위원회 해설에서의 설명. 2015. 12. 23 최종방문.

(2) 성 격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을 프랑스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유와 행사를 위한 기본적 보장수단 속에 포함시키는 판례를 내놓았다.⁴⁾ 헌법 제34조는 법률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해서는 법률사항이다.⁵⁾ 유럽인권협정(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에서 위 권리를 끌어내는 것은 어려우나 유럽재판소 판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⁶⁾

2.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의 변천

1978년에 정보공개법에서 행정청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고 따라서 프랑스 행정문화의 특징이었던 은밀성과의 절연을 통해 공적결정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열어주었다.

그 후 정보공개법은 2000년 4월 12일 법률과 2005년 6월 6일 법률 명령에 의해 완전히 새로 개정되었다. 2000년 4월 12일 법률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규정에서 비기명(non nominatif)이란 용어를 삭제하였다. 즉 2000년 4월 12일 제2000 - 321호 법률(loi n° 2000 - 321 du 12 avril 2000)은 기명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규정하였는데 동 개정에서는, 행정청의 전자정보처리된 파일과 디지털화된 문서도 포함하고 정보 공개대상 행정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였다.⁷⁾

4) CE(최고행정법원) 29 avril 2002, Ullmann. 이 판결에 대해서는 R.F.D.A., 2003, 135면 참조.
 5) J. Waline, Droit administratif, 25^e éd., Dalloz, 2014, 438면 참조.
 6) CEDH, 2 Sect., 18 nov. 2003, Loiseau/France. J. Waline, 앞의 책, 489면에서 재인용.
 7) 이 개정과 이후 개정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Y. Guana/L. Lалу케, La réforme du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JDA, 2000, 486면 이하 ; S. Boissard, Le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depuis l'intervention de la loi du 12 avril 2000, AJDA, 2003, 1309면 이하 등 참조.

프랑스의 경우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기대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다는 평가가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청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의 투명성이 불충한 것을 의미한다는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1978년의 정보공개법은 2016년 들어 큰 변화를 맞이한다.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어 1978년 정보공개법의 내용이 법전 안으로 편입된 것이다.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간소화하는 2013년 11월 12일의 법에 근거하여 채택된 이 법전화 작업은 행정 객체와 행정주체에 관련된 법의 일반규정 모두를 하나의 법전 안에 집약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행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강화하는데 있다.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은 2015년 10월 25일 공보에 공포되었으며⁹⁾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도 정보공개법 조문에 2016년도 시행예정인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의 해당 규정을 병기한다.¹⁰⁾

3. 새로운 상황 - 디지털시대

디지털시대에 행정청에 의해 생산되고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그 전략적, 민주적인 쟁점이자 동시에 경제적인 쟁점이다 : 공적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공적활동의 통제, 그 효율성,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등에 있어서 아직 넓게 활용되지 않은 영역(전망)

8) 이런 취지로,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Guide d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2007, <http://www.cada.fr/guides,50.html>, 4면.

9) Ordonnance n° 2015-1341 du 23 octobre 2015 relative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JORF n°0248 du 25 octobre 2015, 19872면.

10) 보고서 뒤의 부록 1. 프랑스 정보공개법 주요조문에서는 201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법전을 중심으로 하여 수록하였다 (공공정보의 재활용 부분 제외).

들을 열기 때문이다.¹¹⁾ 행정영역이나 인간의 삶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점 정보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기대에 다 미치지 않는 정보공개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정보의 풍부함이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발전방안모색이 주장되고 있다.¹²⁾ 정보공개가 행정청의 소극성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들이 있다.¹³⁾ 행정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점은 대표적으로 그 공개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를 통해 나타난다.¹⁴⁾

(1) 디지털시대의 명암

잘 구성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행정기관들마다 있다. 10여년 전부터 많은 웹사이트들이 창설되었고 그 사이트들이 적용되는 법, 중요 공적 개입영역, 행정청에 의해 형성된 자료에 관한 정보취득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은 검색 엔진의 발달 등으로 조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국민이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 질은 게재가 늦고 방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¹⁵⁾

11) 이러한 취지로, 상원보고서인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mission commune d'information sur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aux données publiques*, par Mme Corinne Bouchoux(Sénatrice), no 589, Sénat, enregistré à la Présidence du Sénat le 5 juin 2014, <http://www.senat.fr/rap/r13-589-2/r13-589-21.pdf> (이하 'Rapport Sénat'는 '상원보고서'라고 함) 9면. 이 상원보고서는 행정 및 공공정보의 공개에 관한 상원의 공동조사단(위원장 : M Jean-Jacques Hyst 상원의원),이 2014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14주 동안 청문회 등을 개최하는 등 그 활동을 보고하는 것이다. 청문회는 http://www.senat.fr/commission/missions/acces_aux_documents_administratifs_et_aux_donnees_publicques/ 참조.

12) 이러한 취지가 담긴 문헌으로, 위 *Rapport Sénat*, 9면, 25면.

13) 위 *Rapport Sénat*, 10면.

14) 위 *Rapport*, 73면.

15) 위 *Rapport*, 10면.

4. 논의의 중추 범위와 참조대상

(1) 논의의 중추 범위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이 되더라도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중요하고 많이 다루어진다. 공개거부사유 해당 여부가 특히 많이 논의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제에서의 중심적 논제이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향에서도 주안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의 전반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점에 역점을 두고 고찰하였다는 것이다.

(2) 참조대상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법령과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의 심결례, 연구논문, 판례, 판례평석 등을 참조하였는데, 특히 비공개사유의 예들은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의 심결례가 실무상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이다.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가 전문적인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정보공개법제에 중요한 심결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참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프랑스 정보공개법에 대한 해설과 그 심결례를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이하에서 인용을 모두 하였지만 혹시 누락되는 부분은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의 홈페이지¹⁶⁾에서 인용된 것이다.

16) <http://www.cada.fr>.

제 2 장 현행 프랑스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이해

제 1 절 정보공개법 개관

프랑스에 있어서 정보공개법제의 일반법으로는 위에서도 언급한 1978년 법률로서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약칭함)이 있다.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상세화하는 명령이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행정문서접근 및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2005년 12월 30일 명령(décret)’이다(Décret n°2005-1755 du 30 décembre 2005 relatif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이하 ‘정보공개법시행령’으로 약칭함).

1. 기명정보의 문제

원래 정보공개법 제1조는 비기명정보만이 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4월 12일 제2000-321호 법률은 비기명이란 말을 삭제하고 기명정보도 포함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기명정보도 포함되긴 하였으나 기명정보는 공개에 제약을 받도록 하여 결국 기명정보에 관해서는 공개의 제한사유로 규율하고 있다.¹⁷⁾

17) J. Fialaire/E. Mondielli/A. Graboy-Grobesco,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2eéd., Ellips, 2012, 503면

2. 광범위한 대상성

(1) 정보공개법상의 행정정보의 개념

1) 예시설

정보공개법 제1조 제2항은 “본 편 제1, 3, 4장에 규정된 행정정보 (documents administratifs)란 그 보관 날짜, 장소, 형태, 저장매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외 공법상 사람·법인에 의해 또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적(私的)인 사람, 사법인(私法人)에 의해 공공서비스 수행의 범주 내에서 생산된(produits) 또는 취득한(reçus) 정보(documents)를 말한다. 그와 같은 정보는 특히 기록, 보고서, 연구보고서, 회의록(속기록), 조서, 통계, 지침, 지시, 회람, 정부의 통첩과 답변, 통신, 의견, 예측, 결정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는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고¹⁸⁾¹⁹⁾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넓게 보고 있으며 정보공개위원회에 의해 점점 확대 해석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위와 같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항은 “제6조의 유보 하에 제1조에 언급된 기관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그 공개를 신청한 사람에게 이 장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개하여야(ont tenues de communiquer)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생산된(produits) 또는 취득한(reçus) 정보

2009년 4월 29일 법률명령으로 이 행정문서 정의규정인 정보공개법 제1조 제2항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형성된(élaborés) 또는

18) avis n° 20080843 du 21 février 2008.

19) J. Fialaire/E. Mondielli/A. Graboy-Grobesco,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2eéd., Ellips, 2012, 502면

보유되고 있는(détenus) 문서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위 2009년 4월 29일 법률명령으로 생산된(produits) 또는 취득한(reçus) 정보라고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이 행정정보의 개념을 확대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²⁰⁾

(2) 지침, 훈령 등

지침, 훈령, 회람과 실정법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의 설명을 담고 있는 장관의 답변은 공표의 대상이다(동법 제7조 제1항).

3. 공적 기록물의 등재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능한 행정정보를 공적 기록물(archives publiques)로 등록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행정정보의 공개의 권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동법 동조 제6항) 공적 기록물의 경우에도 공개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긴 하나 법 규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공적 기록물은 그 유형에 따라 시간의 경과(예를 들어 50년, 100년)이 지나야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²¹⁾ 문화유산법전에서 그 경과년수를 규정하고 있다.

4. 문학적 · 예술적 저작권의 보호

행정정보는 문학적 권리, 예술적인 저작권의 유보 하에서 공개된다고(동법 제9조)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학적 권리, 예술적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행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이다.

20) A. Chaminade,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aux archives publiques, La Semaine juridique, 2009, no22, 5면 참조.

21) Jacques Robert, Jean Duffar, Droits de l’homme et libertés fondamentales, 8^{éd.}, Montchrestien, 2009. 443면.

제 2 절 공개대상 정보

제 1 조²²⁾

정보에 대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의 권리는 행정정보 공개의 자유에 관한 본 절의 제 1, 3, 4장의 규정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본 절의 제 1, 3, 4장에서 행정정보(documents administratifs)는 ‘날짜, 보존장소, 형식, 매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에는 특히 소송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부분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리고 결정이 해당된다.

1. 형 태

정보공개법 1조에서 ‘소송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부분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리고 결정’을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단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정보공개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록된 일체의 문서(écrit), 비디오 또는 오디오 기록, 자동화된 정보(information automatisée) 등도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탄원서²³⁾, 수질관리분석서(analyses de contrôle de la qualité des eaux)²⁴⁾, 지불어음(mandats de paiement)²⁵⁾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²⁶⁾)은 두 장관 간의 서신교환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로 보았다.²⁷⁾

22)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00-1조 및 제L300-2조 1항.

23) conseil n° 20051689 du 14 avril 2005.

24) conseil n° 20031467 du 27 mars 2003.

25) CE, 26 septembre 1986, Ville de Metz.

26) ‘Conseil d’État’의 번역어를 ‘국사원’ 또는 ‘국참사원’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이 기관이 행정소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최고심법원이라는 기능을 주된 것으로 보고 오늘날의 어감에 맞게 ‘최고행정법원’으로 번역하였음.

그런데 정보는 기록된 문서의 형태이든 또는 그 밖의 형태이든 간에 ‘형체’(matérialisation)를 띄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형식의 문서 (écrit)가 타자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의 입장이다.²⁸⁾ 이에 관하여 정보 공개위원회는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행정정보로 인정하였다 :

- 환자의 진료기록의 일부인 X선 촬영사진²⁹⁾
- 가족치료의 녹화자료³⁰⁾, 시의회 회의 녹음³¹⁾ 등
- 영조물법인 직원의 정보화된 목록³²⁾
- 정보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정보³³⁾

[표 1] 정보의 형태³⁴⁾

프랑스	한 국
<p>(소송)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 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부문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리고 결정.</p> <p>그러나 ‘형체’만 띄고 있으면 정보로 인정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의해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p>	<p>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p>

27) CE, 21 juillet 1989, Association SOS Défense et Bertin.

28) avis n° 20011283 du 22 mars 2001.

29) avis n° 20030330 du 23 janvier 2003.

30) conseil n° 20050872 du 17 février 2005.

31) avis n° 20053313 du 25 août 2005 ; conseil n° 20065405 du 21 décembre 2006

32) TA Bordeaux, 20 octobre 1988, Synd. gén. personnel CGT CHR Bordeaux.

33) conseil n° 20061284 du 8 juin 2006.

34) 프랑스 정보공개법 제1조 및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2. 정보보유기관

제 2 조 1항³⁵⁾

제 6 조 규정의 유보 하에, 제1조에 언급된 기관은 본 장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의 정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문서를 일컫는 바, 이들은 동시에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기관이다.

(1) 국 가

중앙행정청 및 그 권한이 이양된 지방행정청을 포함하며, 다음의 독립행정청 또한 정보공개 제2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 시청각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³⁶⁾ ; 금융위원회(Commission bancaire)³⁷⁾ ; 차별철폐와 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³⁸⁾ ;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³⁹⁾ ; 국가안전윤리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⁴⁰⁾ ; 정보공개위원회⁴¹⁾ 등.

그리고 법인격은 없지만 국가의 조직기관, 대표적으로 노사분쟁위원회도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⁴²⁾ 주목할 점은, 대통령실(services de la

35)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1조.

36) avis n° 20064640 du 26 octobre 2006 et avis n° 20090056 du 15 janvier 2009.

37) avis n° 20090087 du 15 janvier 2009.

38) avis n° 20080635 du 7 février 2008.

39) avis n° 20074963 du 21 février 2008.

40) avis n° 20074131 du 25 octobre 2007.

41) avis n° 20023955 du 3 octobre 2002.

42) CE, 13 avril 1988,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emploi c / 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régionaux de fonctionnaires des conseils de prud'hommes.

Présidence)의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 본인은 제1조에서 언급된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67조에서 ‘대통령은 소송, 증거조사, 예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il ne peut faire l’objet «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bulletin de paiement)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⁴³⁾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부속 기관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보유기관에 해당한다.

(3) 영조물 법인

모든 영조물 법인은 그 성격 - 행정적,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 - 을 불문하고 정보공개법상의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으로 본다. 다만 공공서비스 임무에 관계되는 정보만 이에 해당된다. 교육기관⁴⁴⁾,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 국립박물관, 공립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관광 안내소 등이 있다.

(4)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행정적 성격을 갖는다.

사법인이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고행정법원이 2007년 2월 22일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règles)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3) avis n° 20090869 du 19 mars 2009.

44) avis n° 20072197 du 7 juin 2007.

[표 2] 정보보유기관(정보공개 의무기관)의 비교⁴⁵⁾

프랑스	한 국
<p>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dans le cadr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영조물 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p> <p>* 대통령 본인은 제외 * 국회 및 사법기관의 정보, 소송 정보 제외</p>	<p>“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가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p>나. 지방자치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이에 따라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가 요구된다 :

- 사법인의 임무와 관련된 공익이 확인되는지(avéré), 그럴 경우,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지?
- 사법인이이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는가?
- 공공보조금이 사법인의 재원에 있어 큰 비중 또는 5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지?
- 공공기관이 사법인에 대표자, 감독관(observateur) 등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 공권력이 사법인에 행사하는 감독의 방식이 무엇인지

45) 프랑스 정보공개법 제1조 및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법인이 도달하여야 할 결과 또는 충족해야 하는 의무 등을 설정하며 공법인과 협약,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3. 공공서비스 수행과의 관련성

정보공개법 제1조는 2005년도 오르도낭스에 의해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dans le cadr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의 문구가 추가되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는 행정청이 공공 서비스 임무와 충분한 직접적 연관성 하에서 생산하고 취득했을 때의 정보를 일컫는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개가능 공공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순수히 사적성격의 정보에 대해 열람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단순히 행정청에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에 행정적 성격 부여할 수는 없으며,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권한과 연관될 것이 요구된다.

[표 3] 정보의 공공성 판단기준⁴⁶⁾

프랑스	한 국
‘공공서비스의 수행과의 관련성’ 하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	‘공공기관’이 ‘직무상’

4. 공개의 제한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 (documents)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46) 프랑스 정보공개법 제1조 및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공개제외에 대한 이유로 행정의 평정함과 정보공개의 제약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⁴⁷⁾

(1) 미완성의 정보

제 2 조 2항⁴⁸⁾
정보공개권은 완성된 정보에만 적용된다

정보공개법 제2조 2항에 따라 정보공개권은 완성된 정보(*documents achevés*)에만 적용되고 완성되지 않은 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정보가 구상되는 동안 수차례의 형태를 거친다거나 또는 여러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명확하지 않다. 최종본의 작성에 있어 중간단계에 있고, 그 내용이 임시적이며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미완성의 정보에 해당한다. 부분적인 정보, 있는 그대로 이용이 불가능한(*inexploitable en l'état*) 정보 또한 미완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장래에 수정이 될 예정에 있는(*susceptible de faire l'objet de modifications à l'avenir*) 정보(예를 들어, 새로운 조사를 기반으로 장래에 완성될 연구), 실수로 얼룩이 졌거나 또는 행정청에 의해 반려된 결정이거나 존재할 자격이 있는(*ayant vocation à l'être*)⁴⁹⁾ 정황만으로는 미완성의 정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회계관련한 정보는 개별적인 판단대상이 된다. 회계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정보는 장부에 부기되면 일반적으로 공개대상의 정보가 된다(*les documents qui retracent les écritures comptables sont, en principe,*

47) <http://www.cada.fr/un-droit-qui-garantit-la-transparence%2c19.html> 에서의 정보공개위원회 해설에서의 설명. 2015. 12. 23 최종방문.

48)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2조 1항.

49) avis n° 20091296 du 16 avril 2009.

communicables dès leur passation).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회계는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결산(clôture) 전에 종결(passées)될 수 있고, 의결 전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 수립되자마자(dès son élaboration) 완성된 정보로 간주된다.⁵⁰⁾

한편, ‘미완성 정보’는 문서의 형태상 ‘예비적 단계의 정보’와 혼동될 수 있는데 이 둘은 구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비적 단계의 정보는 행정결정 절차 중에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최종영향평가(조사)(étude d’impact définitive)는 완성된 정보이지만, 영향평가 결정이 작용하기 전까지는 예비적 성격을 가진 정보로 본다. 반대로 작성 중의 안내서(guide pratique)는 ‘미완성 정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예비적 단계의 정보’는 아닌데, 왜냐하면 행정결정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과 관련한 정보(informations)은 ‘수립’ 중(en « cours d’élaboration »)에 있을 때에는 공개 불가능하다.

(2) 행정결정의 과정 중에 있는 예비적 단계의 정보

제 2 조 3항⁵¹⁾

정보공개권은 행정결정의 과정 중에 있는 예비적 단계의 정보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은 제2조 3항에서 “정보공개권은 행정결정의 과정 중에 있는 예비적 단계의 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아직 결정의 과정 중에 있는 결정을 위한 준비(préparatoires)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음을 규정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완결된 행정결정(véritable décision administrative)이 아닌 단순한 정책적 방침(simple orientation politique)에 대해서는 정보의 예비적 성격을 부정하였다.⁵²⁾

50) avis n° 20080072 du 10 janvier 2008.

51)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2조 2항.

52) avis n° 20090711 du 26 février 2009.

예산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교부금, 회계서류 등은 공개가능하다. 국고국(Trésor public)에서 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전망분석이 심의 기관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의되지 않았다면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 성격의 전망분석, 예를 들어 지방재정의 가능성 있는 변동(évolution possible des finances locales)은 예비적 성격의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다.⁵³⁾

2005년 10월 26일 법률에 따라 제정된 환경법전 제L.124-4조 및 제L.124-5조에서는 환경에 관한 정보(informations)(동 법전 제L.124-2조 상의)에 있어 ‘예비적 정보’의 개념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설사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라 할지언정, 완성 되는대로 지체없이 제공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상의 예비적 정보는 별도의 추이를 요하는데 이에 관한 판례는 풍부 하기에 더욱 그렇다.

정보공개위원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분할하여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정보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허가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법 규정에 의해 부분공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데, 환경법전 제L.124-1 및 제L.124-2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련 정보 (informations) - 지방도시계획의 생물학적 환경연구⁵⁴⁾와 같은 - 또는 지정된 시설의 개발허가 요청서에 포함된 일부 서류⁵⁵⁾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동법 동조 단서는 “법률 또는 명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권리를 창설하는 하나의 개인적 결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한 경우 그 법률규정이나 명령규정들에 의해 규정된 의견들은 이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 송부되자마자 이 청구인에게 통지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창설적

53) conseil n° 20083995 du 23 octobre 2008.

54) avis n° 20054767 du 1er décembre 2005.

55) conseil n° 20091439 du 14 mai 2009.

결정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전항의 예외로서 행정청이 수리한 둘 이상 여러 청구들의 비교되는 장점들에 관한 의견들은 그 의견들이 준비하는 행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한은 공개되지 않는다(동법 동조 제4항).

- * 환경에 관한 문서는 예외적으로 과정 중의 것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 *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도 대상이 아니다.⁵⁶⁾

(3) 공적으로 전파(diffusion)된 정보

제 2 조 5항⁵⁷⁾
 정보공개권은 공적으로 전파된 정보에 대하여는 행사되지 않는다.

제1조에 언급된 정보보유기관은 제2조 5항에 근거하여 공적으로 전파(diffusion)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즉 정보공개권리는 공적으로 전파된 정보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원래 공적으로 ‘공개’(publication)이었으나 2000년 4월 12일 법에 의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전파’로 수정되어, 범위가 더 제한된 셈이다.

‘공적전파’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는 지리적, 기술적, 가격적 측면에서의 정보의 접근가능성(l’accessibilité)에 주목한다.

- 유럽공동체 관보 : 정보공개위원회는 경쟁계약 및 공공조달의 체결 통지(avis d’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et d’attribution de marchés)에 대해 ‘공중전파’의 성격을 자주 인정하는 경향⁵⁸⁾
- 프랑스 관보 : 웹 사이트의 발전에 의해 접근이 용이한 공중전파에 해당함⁵⁹⁾

56) R.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1, 15^e éd., Montchrestien, 2001,487면.
 57)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2조 4항.
 58) avis n° 20012061 du 14 juin 2001.
 59) pour d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 avis n° 20044622 du 4 novembre 2004 ; pour

제 2 장 현행 프랑스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이해

- 공보 : 국세청 공보에 발행된 국세청의 ‘행정적 견해’(doctrine administrative)⁶⁰⁾ 와 교육청 공보⁶¹⁾를 ‘공중전파’로 봄.
- 행정행위 수록집(recueil) 출간 : ‘공중전파’에 해당⁶²⁾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 사용자가 다소 제한적이었고 제반시설 또한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는 각 부처의 웹 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재함을 두고 공적 전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⁶³⁾ 이러한 입장은 당연히 변화하였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 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적전파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즉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의 실제적 접근가능성(l’accessibilité pratique)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유로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불가 판단을 내렸다 :

- 도(道)의 공문⁶⁴⁾ ;
- 선발시험 심사위원의 보고서⁶⁵⁾ ;
- 지방도시계획⁶⁶⁾ ;
- 회계법원(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의 최종 관찰 보고서⁶⁷⁾

그러나 정보공개위원회는 엑스트라넷에 게재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공적전파의 성격을 부정하였다.⁶⁸⁾

un article législatif d’un code : avis n° 20033142 du 28 août 2003 et 20040176 du 8 janvier 2004 ; pour une loi : conseil n° 20060734 du 16 février 2006 ; pour des décrets : conseil n° 20021724 du 25 avril 2002 ; pour des documents relatifs à la loi de finances : avis n° 20010694 du 22 février 2001.

- 60) avis n° 20003857 du 5 octobre 2000.
61) avis n° 20010481 du 8 février 2001.
62) avis n° 20014471 du 6 décembre 2001.
63) avis n° 20004094 du 7 décembre 2000.
64) conseil n° 20055093 du 15 décembre 2005.
65) avis n° 20061286 du 16 mars 2006.
66) avis n° 20070320 du 25 janvier 2007.
67) avis n° 20074824 du 20 décembre 2007.
68) avis n° 2009060- du 6 février 2009.

이 경우 위원회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거나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웹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 한국법과의 비교 : 공적으로 공개된 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의 규정인데 한국의 경우 실무에서는 인터넷에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청구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어서 프랑스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대조적이라고 할 것이다.

5. 기타 정보

(1) 의회의 각종 의사록(actes)과 정보

제 1 조 3항⁶⁹⁾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취득된 의사록(actes) 과 정보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제58-1100호 오르도낭스에 의해 규율된다.

정보공개법은 의회에 관한 문서는 동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동법 제1조 제3항은 “의회에 의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actes)과 문서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제58-1100호 법률명령(오르도낭스, ordonnance)에 의해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입법기능의 실행과 관련되는 문서는 정보공개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국회의 조사위원회 보고서⁷⁰⁾). 그러나 2000년 4월 12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사록 전부 - 의회 부속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서 포함 - 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서 배제되었다. 정보공개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69)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00-2조 2항.

70) CAA Nantes, 30 juillet 2003, Association « L'arbre au milieu »

제 2 장 현행 프랑스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이해

- 국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서⁷¹⁾ 또는 행정조사(enquête administrative) 결과의 사본⁷²⁾
- 국회의장 또는 상원의장이 보낸 우편물 사본⁷³⁾
- 국회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기록 일체⁷⁴⁾

(2) 재판에 관한 정보 (les documents juridictionnels)

정보공개위원회와 행정판사는 판사가 생산하거나 판사의 요청에 의해 생산된 정보, 그리고 판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행정청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⁷⁵⁾

(3) 사법기관 관할의 각종 정보(les documents relevant de l'autorité judiciaire)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절차상의 정보는, 소송제기 여부와 독립적으로 (indépendamment de l'engagement ou non d'une procédure juridictionnelle), 정보공개 대상이다. 사법결정 또는 사법 문서(정보)가 반드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독 아래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만 공개가능하다.

정보공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조서(procès-verbaux) 및 범죄(infractions pénales)기록. 도로법전(예를 들어 속도위반 사진⁷⁶⁾), 노동법 또는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서는 형사절차법에 따른 방식과 (문서의) 형태에서만 공개가능하다.⁷⁷⁾ 정보공개위원회는 특히 노동기준감

71) avis n° 20010580 du 8 février 2001.

72) avis n° 20041777 du 29 avril 2004.

73) avis n° 20013074 du 30 août 2001.

74) avis n° 20034009 du 9 octobre 2003.

75) CE, 27 juillet 1984, Association SOS Défense, pour les juridictions judiciaires.

76) TA Bordeaux, 2 mai 2007, M. A.

77) avis n° 20073037 du 13 septembre 2007.

찰관(inspecteurs du travail)의 조서는, 노동법전 제L611-10조에 따라, 전적으로 검찰에 속한다고 지적한다.⁷⁸⁾

- 대통령의 사면권(droit de grâce) 행사에 있어 결정을 요청받은 건에 관한 기록⁷⁹⁾ ; 사면(amnistie) 데크레 또는 사면청원(recours en grâce)의 수리여부 결정⁸⁰⁾
- 이른바 ‘오염된 혈액’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사면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의 서명 명단⁸¹⁾
- 호적등본⁸²⁾ : 호적등본의 공개는 문화유산법전 제L. 213-1 및 L. 213-2조에 의해 규율되는데 정보공개위원회는 1962년도 데크레⁸³⁾에 의해 설명할 권한이 있다.⁸⁴⁾ 그러나 호적등본을 기초로 구청에서 작성한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정기 일람표(relevés réguliers)는 신고인의 신원 및 주소를 제외하는 조건 하에서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한다.

행정정보의 성격이 부정되는 사법경찰의 보고서와는 달리, 경찰 또는 헌병대가 행정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행정정보에 해당한다.

제 3 절 청구인과 공개주체기관

1. 청구인

모든 사람과 법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권리보호이익(본인의 권리 침해가 문제되어야 한다는 이익)을 있음을 밝히지 않고(권리보호이익 없이도) 행정문서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⁸⁵⁾

78) conseil n° 20012282 du 14 juin 2001.

79) avis n° 20023331 du 5 septembre 2002.

80) TA Paris, 9 février 2007, M. B.

81) avis n° 19940702 du 31 mars 1994

82) CE, 24 janvier 1983, Bertin ; TC, 17 juin 1991, Mme M.

83) décret n° 62-921 du 3 août 1962

84) avis n° 20102409 du 17 juin 2010 et Les archives

85) <http://www.cada.fr/un-droit-qui-garantit-la-transparence%2c19.html> 에서의 정보공개위원회

2. 공개주체기관

(1) 보유기관

앞서 언급한대로 공개청구권은 그 형태나 보조매체가 어떠한 관계없이 행정청이 생산한 모든 문서들, 그리고 행정청이 사인들로부터 수리하는 문서들에 적용된다. 즉 모든 공공기관들에 대해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적 기관들의 그 임무에 연관된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⁸⁶⁾⁸⁷⁾ 위에서 대상정보에서 언급한 대로 의회의 문서들은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의 경우에도 제한의 대상이 된다.

(2) 이송 등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 규정된 어느 한 행정청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동조가 규정한 다른 어느 한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그 행정청에 이송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7항).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청 하나가, 또는 정보공개위원회가 제20조와 제21조 규정된 여러 공개제도에 해당되는 청구일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았을 때 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L.213-3조에 의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청(또는 위원회)이 공개제도들 전체에 비추어 직권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동법 동조 제8항).

자신의 해설에서의 설명. 2015. 12. 23 최종방문.

86) <http://www.cada.fr/un-droit-qui-garantit-la-transparence%2c19.html> 에서의 정보공개위원회 자신의 해설에서의 설명. 2015. 12. 23 최종방문.

87)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적 기관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는 CE, 17 avr., 2013의 3개의 판례들을 참조. A.J.D.A., 2013, 1920면 이하, B. Delaunay 평석 참조.

제 4 절 비공개사유와 사적정보

* 프랑스의 경우 비공개대상과 그 사유 등을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입법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규정들이 참조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1. 비공개사유

1978년 법 제6조에 비공개사유가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이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고 위원회나 행정법원의 판례가 30년 이상 적용 해오면서 점점 상세화하여 왔다.⁸⁸⁾

(1) 행정법원의 의견, 회계법원 문서 등

제 6 조⁸⁹⁾

I. - 아래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재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재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 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2013-907 법률 (이해충돌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한 공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고 있는 문서, 공중보건법전 제 L.6113-6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전의 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의 문서), 2001년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정인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제공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

88) 이런 취지로,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http://www.cada.fr/guides,50.html> (이하 'guides'로 약칭함), 23면 참조.

89)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5조.

정보공개법은 아래의 정보들은 공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 I).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들의 의견, 재정법원법전 제 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재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 회계법원의 문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는 문서들,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제2013-907호 법률’(la loi n° 2013 - 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이해충돌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 필자 주) 제20조가 규정한 공적생활투명성최고위원회 (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위원회가 자신의 조사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고 있는 문서,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6113-6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들, 같은 법전 제L.1414-3-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종사자(의사)의 인증 이전의 문서들(인증평가 과정에서의 문서), 2001년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정인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제공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들.

* 프랑스의 경우 시험, 평가, 인증 이전의 문서들에 대한 비공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열람 · 공개로 인한 침해를 가져 올 행정정보

제 6 조⁹⁰⁾

I. 2° 열람 또는 공개가 다음의 사항에 침해를 가져 올 행정정보 :

- a) 정부 및 행정 집행권을 가진 책임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비밀
- b) 국방에 관한 비밀

90)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5조.

- c) 프랑스의 외교정책 수행
- d)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개인의 안전
- e) 화폐 및 공신력
- f)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사전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안 (재판부가 공개 가능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제외)
- g) 조세 및 관세 포탈에 관한 세무 당국의 조사자료
- h) 또는 환경법전 제L.124-4조의 유보 하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그 밖의 비밀

그 외에 열람이나 전달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행정문서들도 공개가 거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a) 정부나 집행권에 관련된 관계 책임기관의 심의의 비밀, b) 국방에 관한 비밀, c) 프랑스의 해외정책의 방침, d) 국가의 안전, 공공안전 또는 개인의 안전, e) 화폐와 공신력(*crédit public*), f) 권한있는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재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사전 작용의 전개, g) 권한있는 기관의 업무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과 세관 위반행위의 조사, h) 환경법전 제L.124-4조의 유보 하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비밀들이다.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거부사유에 해당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관건을 이루는 사건들이 많고 따라서 이에 관한 심결례나 판례들이 적지 않으므로 아래에 분설하여 본다(아래에 a)에서부터 e) 까지 정도에 대해 주로 살펴보자).

1) 정부나 집행권에 관련된 관계 책임기관의 심의의 비밀

이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사실 정부의 심의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내각회의, 행정각부간의 활동과 같은 합의체구성체의 활동, 수상과 행정각부장관의 결정을 분명 의미하지만 ‘집행부에 속하는 책임있는 기관들’이란 표현은 불명확한 면이 있다. 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제외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심결례를 보면, 예외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3가지 준거를 설정하고 있다 : 심의기관의 지위, 정보의 내용과 대상, 결정권의 범위 이 세 가지이다.⁹¹⁾

① 심의기관의 지위

정보공개위원회가 비공개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 심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심의사항 정보들을 볼 수 있다.

- 내각회의(le Conseil des ministres)가 기초한 서류들⁹²⁾
- 국방위원회, 국토계획의 장관회의(conseils et comités de défense et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du territoire)의 회의록(les procès-verbaux)⁹³⁾
- 내각회의 심의를 거슬러 보여주는 장관들 또는 행정각부의 주요 책임자들 간의 심의준비 도중에 교환 서신⁹⁴⁾
- 어떤 계획에 관하여 정부대표자가 참여하여 토론한 회합에 있어서의 속기록(les comptes rendus)
- 장관들 간 협의회(réunions interministérielles)의 속기록 : 군대주둔지 귀속 문제에 관한 협의⁹⁵⁾
- 명령의 채택 이전 준비단계에서 서신교환, 주석, 회의 속기록⁹⁶⁾ ; 명령안의 연속된 버전들(les versions)⁹⁷⁾ ; 명령의 제안보고서⁹⁸⁾ ; 각료(membres des

91) <http://www.cada.fr/le-secret-des-deliberations-du-gouvernement-et%2c6099.html>. 2015. 12. 30. 최종방문.

92) 2005년 5월 26일 제20051549호 위원회의견(avis n° 20051549 du 26 mai 2005), <http://www.cada.fr/le-secret-des-deliberations-du-gouvernement-et%2c6099.html>에서 재인용함. 2015. 12. 30. 최종방문. avis란 위원회의 의견이고 그 뒤 n°는 제시된 의견의 번호, 그 뒤 26 mai 2005는 일, 월, 년도임. 이하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avis)의 인용도 <http://www.cada.fr/>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혀둠.

93) avis n° 20043151 du 22 juillet 2004 ; avis n° 20081250 du 20 mars 2008.

94) avis n° 19941734 du 21 juillet 1994.

95) avis n° 20014187 du 20 décembre 2001.

96) avis n° 19941734 du 21 juillet 1994.

97) avis n° 20023721 du 5 décembre 2002.

98) 위원회 의견(conseil n° 20011270 du 22 mars 2001 et n° 20060649 du 2 février 2006). 위원회는 이 문서의 내용이 공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cabinets ministériels)의 보수에 관한 개혁을 결정하기 앞서 준비자료들⁹⁹⁾

- 종결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공개가능한 문서이나 그 중에 장관들 간의 협의모임에 관한 결정발췌부분(이를 가려서 부분공개)¹⁰⁰⁾
- 내각회의에서 채택되어질 법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¹⁰¹⁾

② 대상정보의 내용과 대상

정보공개위원회가 설정한 두 번째 판단기준인 ‘대상정보의 내용과 대상’에 관해서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기관들의 재고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들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위원회와 행정법원판례가 판단한 비공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canton(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회선거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의해 내무지방분권 장관(ministre de l’Intérieur et de la Décentralisation)에 제출된 canton 선거구획정에 관한 제안¹⁰²⁾
- 공무원 상여금에 관한 보고서(rapport sur les primes des fonctionnaires)¹⁰³⁾
- 정치적 성격의 기록물(les archives à caractère politique)로 즉 조루쥬 뵙피두(Georges Pompidou)대통령 기금과 프랑스-영국간 관계에 관한 문서들¹⁰⁴⁾, 대통령 기록물들(지스카르 데스땡(Giscard d’Estaing) 대통령과 각료에 관한 기록물¹⁰⁵⁾,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과 니제르(Niger)공화국과의 관계에 관한 기록물¹⁰⁶⁾

*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기록물에 관하여서도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99) avis n° 20022698 du 27 juin 2002.

100) avis n° 20021494 du 16 mai 2002.

101) avis n° 20072239 du 7 juin 2007.

102) <http://www.cada.fr/le-secret-des-deliberations-du-gouvernement-et%2c6099.html>. 2015. 12. 30. 최종방문.

103) 이는 최고행정법원의 판례이다. CE, 2 décembre 1987, Mlle Pokorny.

104) avis n° 20061720 du 27 avril 2006.

105) avis n° 20074444 du 22 novembre 2007.

106) avis n° 20071417du 5 avril 2007.

* 행정법원의 관례 - 행정기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실제 비공개사유(예를 들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져 오는 것인지 여부 등)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⁰⁷⁾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 대외무역 자문관직에 임명을 거부에 관한 자료는 그에 부여된 전문감정의 임무라는 고려하면 정부심회의 비밀에 해를 미칠 성질이 아니므로 공개청구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¹⁰⁸⁾

③ 결정권의 범위(L'étendue du pouvoir décisionnel)

재량권행사의 경우 비공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훈장 수여 관련 서류를 들 수 있다.¹⁰⁹⁾ 이는 사실 앞서 본 공개대상에 관한 법리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된 형성 중의 문서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연동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¹¹⁰⁾ 이러한 지적은 어떤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에서는 재량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 국방에 관한 비밀

국방비밀의 정의는 형법전 제L.4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1998년 7월 17일 제98-608호 명령에 정해진 조건 하에서 분류된, 국방에 관련된 자료, 경과, 문서, 정보처리 된 데이터나 파일이 국방의 비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본다.¹¹¹⁾

정보공개법 제6조가 국방비밀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긴 하나 권한있는 행정청이 특히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방법전(code de la défense) 제L. 2312-1조 이하 규정에 따라 국방비밀 자문

107) CE, 22 février 2013, Fédération chrétienne des témoins de Jéhovah de France, n° 337987 판결.

108) CE 15 mai 2009, Minist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c/ M. Colibert, n°307292, S. Brondel, communication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et secret des délibérations du gouvernement, AJDA, 2009, 1017면 참조

109) avis n° 20000168 du 6 janvier 2000 ; avis n° 20074232 du 8 novembre 2007

110) <http://www.cada.fr/le-secret-des-deliberations-du-gouvernement-et%2c6099.html>. 2015. 12. 23 최종방문.

111) CE, 25 mai 2005, Association Reporters sans frontières.

위원회의 개입이 있는 후 비밀분류목록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L. 213-2조의 I 의 3°에 규정된 50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 경우는 비밀해제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개 가능해 진다), 또는 그 이전이라도 유산법전 제L. 213-3조 규정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¹¹²⁾

북대서양조약기구(l'OTAN.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영문 : N.A.T.O.)가 기록물로 분류한 것은 동 기구에 의해서만 분류해제가 될 수 있고 2001년 6월 5일의 제2001-480호 명령에 의해 비준되고 공포된 북대서양조약의 당사국들 간에 정보의 안전에 관한 합의에 따른 동 기구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¹¹³⁾

* 기록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산법전에 공공기록물에 관한 공개의 권리, 해제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긴 하다.

3) 프랑스의 해외정책의 방침

위원회는 이에 관한 공개여부 판단에 있어서 문서의 형태보다는 내용을 보고 결정한다(외교 전통문(un télégramme diplomatique), 심지어 “제한된 유포”라고 지정된 형태인 경우에 그 형태만을 이유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¹¹⁴⁾ 즉 전통문이라도 공개대상 문서의 범주에 들어가나 내용을 보고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공개대상 문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다르다. 위원회가 이러한 뜻을 밝힌 2008년 2월 21일의 의견에서 문제된 사안도 외교전통문이었는 데 그 외교전통문이 공개대상 범주에 들어가나 내용상

112) avis n° 20091147 du 30 avril 2009.

113) avis n° 20091147 du 30 avril 2009.

114) avis n° 20080843 du 21 février 2008.

비공개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가능하면 공개청구가 이루어진 맥락을 보고 판단한다.

위원회가 프랑스 대외정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비공개사유를 인정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 국제협상의 기초가 되거나 그 협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거나 프랑스의 입장을 추측하도록 하는 문서들 ; 프랑스와 모나코 간의 감세에 관한 공동 위원회의 결정¹¹⁵⁾ ; 세계무역기구에서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¹¹⁶⁾
- 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국제적 입장 또는 행위를 분석한 문서들¹¹⁷⁾
- 국내문서로서 프랑스의 대외정책이 나타나는 문서, 예를 들어 사증(visa)에 관한 일반 훈령¹¹⁸⁾, 외국인에 대한 레지옹도뇌르 훈장의 수여¹¹⁹⁾, 외국(르완다)에서 소개(疏開)된 사람들의 명단¹²⁰⁾ 등

반면에 장기체류 사증을 거절한 영사(領事) 업무의 기초가 된 서류의 외국인에 대한 공개¹²¹⁾, 망명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정책의 범위 내에서 기록되고 망명신청에 대한 책임국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문서¹²²⁾ 등은 공개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교부 기록물 속에 담겨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던 시기 이전에 관한 내용의 공개도 대외정책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¹²³⁾ 외국의 명예영사 후보자의 장점에 관한 프랑스의 평가도 그 국가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한에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¹²⁴⁾

115) avis n° 20032193 du 22 mai 2003

116) avis n° 20072905 du 26 juillet 2007.

117) avis n° 19971796 du 29 mai 1997 et 20040964 du 4 mars 2004, avis n° 20080843 du 21 février 2008 등.

118) CE, 17 février 1997, ANAFE판결 ; avis n° 19982490 du 10 septembre 1998.

119) avis n° 20065559 du 11 janvier 2007.

120) avis n° 20073309 du 13 septembre 2007.

121) CE, 31 mars 1999, El Fourti.

122) avis n° 20091409 du 30 avril 2009.

123) avis n° 20045456 du 16 décembre 2004 et n° 20053874 du 22 septembre 2005.

124) avis n° 20084435 du 27 novembre 2008.

4) 국가의 안전(*la sûreté de l'État*), 공공안전(*la sécurité publique*)
또는 개인의 안전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개가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되는, 특히 개인을 위협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민간의 안전에 관한 문서의 부분적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예를 들어 *Creys-Malville*의 원자력발전소의 역할의 특별한 계획에 대한 공개). 위원회는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져 올 위험 인지를 공개청구 시점에서 지역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즉 그 공개가 개인 또는 재화의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을 야기하는 것인지, 그 공개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유리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을 보고 판단한다.¹²⁵⁾

5) 화폐와 공신력(*crédit public*)¹²⁶⁾

이 예외는 투기를 조장하거나 공권력행사를 혼란하게 하는 문서들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프랑스 국립은행 또는 국고(*Trésor public*)와 같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문서가 공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적용의 범위는 문서의 공표가 투기적 움직임을 조장하거나 프랑스의 화폐정책을 약화시킬 경우에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위원회가 예를 들어 이러한 예외가 프랑스국립은행에 의해 은행단체에 교부되는 환승인(*agrément de change*)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이 예외

125) <http://www.cada.fr/la-surete-de-l-etat-et-la-securite-publique%2c6140.html>. 2015. 12. 30. 최종방문.

126) 이하의 서술은 <http://www.cada.fr/la-monnaie-et-le-credit-public%2c6141.html>에 게재된 설명을 주로 번역한 것이다. 2015. 12. 23 최종방문.

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이유이다. 대신 퇴직유보 기금의 투자배치계획에 관한 정보는 금융시장에 위치하는 높은 보유액과 금융투기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아 이 예외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고 본다.

(3) 기 타

지방행정법원의 관례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여론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청구서, 요청서는 공개대상이고 정보공개법을 적용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 제6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¹²⁷⁾

[표 4] 비공개대상 정보¹²⁸⁾

	프랑스	한 국
비공개 대상 정보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재정법원법전 제 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재정법원법전 제 L.241-6조에 규정된 지방 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2013-907 법률 (이해충돌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한 공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27) TA Paris, 17 février 2012, M. Avrillier. M.-Ch. de Montecler, Les factures des sondages de l'Élysée sont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communicables, AJDA, 2012, 407 면에서 인용함.

128) 프랑스 정보공개법 제 6조 및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프랑스	한 국
비공개 대상 정보	<p>등청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고 있는 문서, 공중보건법전 제 L.6113-6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전의 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의 문서), 2001년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 특정인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제공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p> <p>2° 열람 또는 공개가 다음의 사항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 :</p> <p>a) 정부 및 행정 집행권을 가진 책임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비밀</p> <p>b) 국방에 관한 비밀</p> <p>c) 프랑스의 외교정책 수행</p> <p>d)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개인의 안전</p> <p>e) 화폐 및 공신력</p> <p>f)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사전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안 (재판부가 공개 가능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제외)</p>	<p>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p>

	프랑스	한 국
비공개 대상 정보	<p>g) 조세 및 관세 포탈에 관한 세무 당국의 조사자료</p> <p>h) 또는 환경법전 제L.124-4조의 유보 하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그 밖의 비밀</p>	<p>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p>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p>

	프랑스	한 국
비공개 대상 정보		<p>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2. 사적정보

<p>제 6 조¹²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행정정보는 이해관계인에게만 공개가능하다 : - 그 공개가 사생활의 보호, 또는 의료비밀 그리고 상업적 · 산업적 기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지명하거나 쉽게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정보 ; - 행위의 공표가 당해 주체(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그 행위를 드러내는 정보 ; <p>의료적 성격을 갖는 정보는 공중보건법전 제L1111-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계인에게 그의 선택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의사를 통해 공개된다.</p>

129)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6조.

정보공개권은 일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만약 정보가 정보접근권에 대한 다른 예외 - 특히 제6조 I에서 열거하는 비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된다면, 이해당사자에게도 공개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비공개사항이므로, 해당 정보가 청구권자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해도 공개되지 않는다.¹³⁰⁾

- * 2000년 4월 12일 법률은 정보공개위원회가 고안한 정의를 받아들여 ‘기명 정보’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 * 행정법원판례 : 지명된 사람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판례로, 지방의회의 회의 기록이 공표되었는데 그 공표 속에 특정인이 기명으로 나타난 사건에서 최고행정법원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은 1978년 정보공개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전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그 사안에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6조를 들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¹³¹⁾

(1)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6조 II의 이해관계인에게만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규정은 대항력 (opposable)이 없다. 그러나, 만약 정보가 정보접근권에 대한 다른 예외 - 특히 제6조 I에서 열거하는 비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된다면, 이해당사자에게도 공개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비공개사항이므로, 해당 정보가 청구권자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해도 공개되지 않는다.¹³²⁾

130) avis n° 20064236 du 28 septembre 2006.

131) 최고행정법원 2010년 7월 7일 (CE 7 juillet 2010, Commune de Mailleroncourt Saint-Pancras, req. no316668) 판결. M.-C. M., L'affichage du compte rendu du conseil municipal ne relève pa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JDA 2010, 1400면에서재인용.

132) avis n° 20064236 du 28 septembre 2006.

아무튼 이해관계인이란 :

- 법률 또는 명령이 이해관계인을 명시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에 공개가능한 사항인) 의료비밀은 공중보건법전 제R.1111-1조에 열거된 사람에게는 대항력이 없다(비공개 대상이다).
- 정보가 청구권자 본인에 관련될 때 : 자신의 인사기록에의 접근을 요청하는 공무원, 자신의 세무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납세자, 자녀의 학교 기록에 접근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 등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정보접근권이 인정된다 :

- 제3자가 이해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Lorsqu'ils produisent un mandat exprès de la personne intéressée).¹³³⁾ 그러나 대리의 사실에 심각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예를 들어 이해관계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든지)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위임장 없이도 기명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¹³⁴⁾
- 제3자가 그 결론이 자신에 상반되는 정보를 요구할 때. (내용보충)
- 일정한 기한이 도래 시 정보공개법 6조 II 상의 비밀사항으로 정하는 정보가 공공 고문서(archives publiques)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공개가능한 정보가 될 때. 즉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문화유산법전 제L.213-2조에 근거하여 행위 시로부터 50년이 경과하면 공개가능한 정보이다.¹³⁵⁾ 동 법전 제 L.213-3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기한의 경과 전에 공개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

133) avis n° 20074470 du 22 novembre 2007.

134) avis n° 20074609 du 6 décembre 2007.

135) avis n° 20091015 du 2 avril 2009.

자연인의 성(nom)이 들어간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되었는데 그 안에 사생활 관련한 다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은 결정하여야 한다 :

-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언급을 숨기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
- 정보를 익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
- 정보공개를 거부할 것인지

(3) 의료비밀

공중보건법전 제L1110-4조에 따라 의료기밀은 사람(자연인, 법인)의 ‘본질적 권리(droits essentiels)’ 중 하나이다. 또한 동 법전 제1111-7조에서는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보호한다.

3. 분리공개

문서에 대한 청구가 본 제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하지 않은 기술(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가리거나 분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 * 가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실무에서는 가리는 것은 부분적인 공개라고 본다.

4. 열람(조회)

이 장에서 말하는 공개불가한 행정문서는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L.213-1조와 제L.213-2조에서 정하는 기간과 조건 하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리고 본조에 규정의 예외로 이 정보에 대한 조회는 문화유산법전 제L.213-3조에 정해진 조건 하에서 허가될 수 있다.

제 5 절 지침·훈령 등, 행정청의 공간(公刊)

지침, 훈령, 회람과 실정법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의 설명을 담고 있는 장관의 답변은 공표의 대상이다(동법 제7조 제1항136). 정보공개법은 최고행정법원의 제3장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 이후 제정된 명령이 이 조 제1항의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4항137).

정보공개법은 동법 제1조에 규정된 행정기관들은 게다가 그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다른 행정정보들을 공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2항138). 그러나 다른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기술(記述)이거나 제13조에 위배됨이 없이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는 이러한 기술을 숨기기 위하여 거기에 지명된 개인들의 식별화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에서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3항139).

제 6 절 청구와 공개의 방식

1. 청구의 방식

청구대상 정보를 제대로 가려 지적하고 분명한 청구를 문서로(이메일로도 가능) 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대상 기관(국가부서, 지방자치단체 부서, 공공단체 부서, 예를 들어 사회보장 창구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는 사적 기관들)을

136)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2-2조 1항.

137)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2-2조 2항.

138)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2-1조 1항.

139)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2-1조 2항.

분명히 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명확한 청구는 사전에 신청인이 문서의 탐지에 진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반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야 할 의무가 결코 없다. 게다가 법률은 행정청에 안내 수준의 요구에 답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확정하여 지정하지 않고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개의 방식

(1) 개관과 법규정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¹⁴⁰⁾ 즉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적 한계는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인의 선택과 행정청의 기술적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행정청에 의해 활용되는 저장매체에 동일한 또는 그 저장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재생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교부하는 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 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료와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그가 위임한 자에 대해서만 전달된다.

140) CE 20 février 2008, Ligue de Normandie de Karaté. 이 결정에 대해서는 A.J.D.A., 2008, 950면 참조 ; J. Waline, 앞의 책, 439면 참조.

(2) 전자컴퓨터적 처리

위에서 언급한 대로 행정청에 의해 활용되는 저장매체에 동일한 또는 그 저장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해당 문서가 저장된 소프트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포맷으로 저장된 것을 청구인이 원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포맷으로 저장된 것으로 교체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논란되었다. 최고행정법원은 정보제공주체기관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를 그 기관 사용하는 것과 다른 소프트웨어나 포맷으로 저장할 의무가 정보공개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¹⁴¹⁾

3. 비 용

위에서 본 대로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어서 즉석에서의 열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나, 종이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복사 등을 통한 공개의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복사비용을 청구인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 비용을 상회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법 제4조 b) 조항이 그 점을 규정하고 있다. 최대 비용(le tarif maximum)은 페이지 당 0,18 €(유로), 디스크 1,83 €, 시디롬 2,75 €이다.¹⁴²⁾

141) CE 17 février 2010, M. Fromentin, n°289389, S. Brondel, Transmission de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ogiciel utilisé, AJDA, 2010, 359면 참조.

142) <http://www.cada.fr/les-modalites-de-communication%2c59.html>. 2015. 12. 30. 최종방문.

제 7 절 공개의 시한과 남용방지

1. 공개의 시한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를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침묵은 묵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는 1개월이 기한이다.¹⁴³⁾ 행정청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답이 상당히 지체되기도 한다.¹⁴⁴⁾

한편 정보공개법은 “거부의 묵시적 결정 또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2. 남용방지

정보공개법은 “행정청은 특히 그 회수, 반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하는 성격의 것인지를 보고 청구가 남용된 것일 때에는 남용하는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9항¹⁴⁵⁾) 있다.

143) <http://www.cada.fr/les-modalites-de-communication%2c59.html>. 2015. 12. 30. 최종방문.

144) 관련 사례가 정보공개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 제시되고 있다(J. Waline, 앞의 책, 490면).

145)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11-2조 8항.

제 8 절 쟁송절차

1. 개 관

프랑스의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거부하거나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 정보공개위원회(CADA)에 이의제기를 하여 그 사건을 위원회가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각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가 있고 해당 기관이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행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점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정보공개위원회에의 이의제기

행정청의 거부의 통지가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한 달을 넘긴 경우에는 그 통지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간 정보공개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해당 행정청은 위원회에 두 달 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아래에 보듯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제기

위원회 이의제기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월권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위원회에의 이의제기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이다.¹⁴⁶⁾ 월권소송은 6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146) 이런 취지로, J Waline, 앞의 책, 439면. 이런 취지의 판례로, CE, Sect., 19 févr. 1982, Dame Commaret. 이 결정에 대해서는 D., 1983, 24면, Laveissière의 주석(위 J. Waline, 앞의 책, 490면에서 재인용) 참조.

제 9 절 공공정보의 재활용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들은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화한 소산이다.¹⁴⁷⁾ 유럽공동체는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한 것이다.

1. 재활용의 원칙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청들에 의해 생산되거나 취득된 정보 안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정보가 생산되었거나 취득되었던 정보의 필요성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임무와는 다른 임무에 그 활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이 재활용의 한계와 조건들은 비록 이 장에 따라 규율되는 행정정보 공개청구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본 장에 의해 규율된다(동법 제10조 제1항).

2. 공공정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장의 적용에 있어서 문서에 담겨진 정보는 공공정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동법 동조 제2항) :

- a) 그 전달이 그 정보가 공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외에는, 제1장 또는 다른 법류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를 구성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
- b) 또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성격의 공공서비스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청들에 의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경우
- c) 또는 지적재산을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경우

147) G. Dupuis/M.-J. Guédon/P. Chrétien, 앞의 책, 같은 면.

3. 적용범위

제1조에 열거된 행정청들 간에 그들의 공공서비스 임무의 행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정보의 교환은 이 장의 의미를 지니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동법 제10조 제3항).

4. 활용조건의 특례¹⁴⁸⁾

본 장의 예외로서 정보가 재활용될 수 있는 요건은, 필요한 경우 a) 교육과 연구의 단체나 연구소들, b) 문화적 단체, 기구 또는 부서들의 경우 그 기관들에 의해 생산되거나 취득된 정보에 해당 정보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들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동법 제11조).

5. 행정청의 동의가 없는 경우의 재활용조건

행정청의 동의가 없는 한 공공정보의 재활용은 그 정보가 변질되지 않고, 그 의미가 변화되지 않으며 그 출처와 그 정보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날짜가 언급된다는 요건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동법 제12조).

6.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의 재활용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는 관계인이 그 재활용이 동의하였거나 보유기관이 익명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익명처리가 없더라도 법률 또는 명령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 동조 제2항).

148) 활용조건의 특례에 관한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자로 폐지된다.

7. 배타적 권리의 부여 여부 문제

공공정보의 재활용은 공공서비스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동법 제14조 제1항).

배타적 권리의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적어도 3년마다 정기적인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8. 수수료의 부과

(1) 고려요소와 한계 등

공공정보의 재활용에는 수수료(redevances)가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재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담고있는 문서를 생산 또는 수령한 행정청은 수수료의 책정을 위해 정보처리비용,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익명처리하기 위한 조치의 비용을 고려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행정청은 또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고 수수료 기준에 필요하면 지적 재산권의 비목으로 부분을 포함하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은 수수료가 차별없이 책정되고 그리고 적절한 계산가능한 기간 투자의 감가상각에 따라 평가된 총산출이 한편으로 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비용을,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하면 본 조에서 정해진 보상을 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공공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들을 생산 또는 수령한 행정청이 상업적 활동 범위 내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다른 집행자들에 대해서 그 행정청 자신에게 부담지게 하는 재활용 비용 보다 더 상회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에 스스로 적용하는 조건들 보다 덜 유리하게 과할 수도 없다(동법 동조 제4항).

(2) 인가증의 교부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가증을 교부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이 인가증은 공공정보 재활용 조건을 정한다. 이 조건들은 일반이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비례적으로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조건들은 경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2항).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형성하거나 보유하는 행정청들은 필요하면 이 정보들의 재활용에 관련되는 개인이나 법인들에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미리 전형적인 인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신청인에 대한 인가증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명령으로 정한다(동법 동조 제4항).

9. 목록 및 재활용조건 등의 공개

공공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행정청들은 그 정보들이 나타나는 주요 문서들의 목록을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공공정보 재활용의 조건은 수수료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산출된 계산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생산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행정청에 의해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동법 동조 제2항).

10. 제 재

본 조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정보를 재활용하는 자는 위원회가 결정한 벌과금(amende)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동법 제18조 제1항).

벌과금의 최대액수는 공공정보가 제12조 규정 또는 교부된 인가에 규정된 재활용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가취득의무를 위배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재활용된 경우에는 제5급의 경범죄에 대해 형법전 제131-13조에 규정된 것과 같다(동법 동조 제2항).

공공정보가 제12조 규정 또는 교부된 인가에 규정된 재활용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가취득의무를 위배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재활용된 경우에는 벌과금의 액수는 그 위반의 경중 정도와 이 위반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비례한다(동법 동조 제3항).

위 제3항의 적용을 위해 제1회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벌과금의 액수는 15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전에 내려진 제재가 확정적인 날자로부터 5년 내에 반복된 위반의 경우 30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고 또는 기업의 경우에 300,000유로의 범위 내에서 최근의 종결된 마지막 행사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 총매출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 동조 제4). 정보공개위원회는 벌과금을 대신하거나 벌과금에 더하여 법위반자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공공 정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첫 위반 후 5년 내에 재차 위반한 경우에 5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동법 동조 제5항).

위원회는 그 제재대상인 자의 비용으로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받은 제재를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6항).

제 3 장 프랑스에서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위원회

프랑스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 위원회가 행정정보공개위원회(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이하에서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라고도 함)이다.

1. 성격과 구성

(1) 성격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행정위원회(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라고 그 성격이 지적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149)에서 “하나의 독립행정위원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 프랑스에서의 독립행정위원회

독립행정위원회는 행정청에 의하여 발생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독립행정위원회는 기술적이고 특히 예민한 영역과 같은 영역에서 규제와 임무도 가진다. 독립행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로서 기본권보장임무가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¹⁵⁰⁾ 기본권보장을 위한 다른 행정기관들이나 사법기관들도 물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본권보장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과 더욱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독립행정위원회는 고유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데 행정명령제정권을 그의 권한 내에서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명령제정권은 바로 독립행정

149)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0-1조.

150) R. Letteron, Libertés publiques, 12^{éd.}, Dalloz, 2012, 136면.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역량을 지닌 위원회이므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주어지는 권한이다. 그러나 그 명령제정권은 한계가 있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독립행정위원회의 명령제정권은 독자적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설립한 법률의 집행하는 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이라고 본다.¹⁵¹⁾ 그리하여 그 위원회 임무에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명령제정권이다. 또한 독립행정위원회는 권고의 권한, 개인적 조치, 특히 제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¹⁵²⁾ 그런데 독립행정위원회의 제재권도 명령제정권과 같이 법률에 의한 엄격한 한계 내에 행사된다. 한편으로는 당해 독립행정위원회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수반하여야 한다.¹⁵³⁾ 예를 들어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저작권보호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그러한 제재의 판단은 법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¹⁵⁴⁾ 한국법의 입장에서 인터넷사용의 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차단이라는 의미에서 사법적 판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151)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o89-260 DC du 28 juill. 1989, Loi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u marché financier(프랑스 헌법재판소 1989년 7월 28일 제89-260,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결정). 이 결정에 대한 평석으로, B. Genevois, RFDA 1989, 671면 참조.

152) Philippe Foillard, Droit administratif, 3^e éd., Larcier, 2014, 47면.

153) R. Letteron, 앞의 책, 133면.

154)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9-580 DC du 10 juin 2009,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09/2009-580-dc/communiquede-presse.45951.html>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프랑스에서 독립행정위원회가 권고를 받으면 상당히 넓게 이를 따르고 따라서 독립행정위원회가 진정한 설득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제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도 한다.¹⁵⁵⁾

독립위원회의 합의제(*la collégialité*)는 대변의 다양성(*le pluralisme de la représentation*)과 심의의 평정성(*la sérénité*)을 보장한다는 지적도 있다.¹⁵⁶⁾

2) 독립행정위원회로서의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그런데 정보공개위원회는 다른 독립행정위원회와 달리 재결권이 법규정 자체로는 없다.¹⁵⁷⁾ 사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제재권이 강하지 않고 행정명령제정권을 가지지 않는 기관이나 독립행정위원회로서의 중요한 의미는 정보공개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라는 점에 있다. 즉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의 “준사법적(*quasi-juridictions*)” 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⁸⁾ 프랑스의 독립행정위원회에 대한 위 서술에서 밝힌대로 정보공개위원회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위원회의 견해제시를 잘 따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독립행정위원회로서의 존재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2) 구성과 조직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조직에서 보장된다.¹⁵⁹⁾

155) R. Letteron, 위의 책, 같은 면.

156) R. Letteron, 위의 책, 136면.

157) J.-P. Costa,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RFSA, 1996, 184면.

158) J. Morand-Deville, *Droit administratif*, 13^e éd., LGDJ, 2013, 128면.

159) 이런 취지로 Philippe Foillard, 위의 책, 50면.

1) 구성원 수와 위원지명대상자(자격)

정보공개위원회는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원 11명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3조¹⁶⁰). a) 적어도 판사, 재판장에 상응하는 급의 최고행정법원 소속원 1명, 대법원 판사 1명, 회계법원 판사 1명인데 이들은 현직이거나 명예직에 있는 자들로서 각각 최고행정법원의 부원장, 대법원장, 회계법원장에 의해 지명된다. b) 하원의장에 의해 지명되는 1명의 하원의원, 상원의장에 의해 지명되는 상원의원 1명, c) 상원의장에 의해 지명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un élu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1명, d)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현직 또는 명예직 교수 1명, e) 프랑스 기록소 소장(le directeur des Archives de France)이 제청하는 기록물 영역 전문적 인사 1명, f)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의 위원장이 제청하는 개인적 성격 정보의 보호 영역에서의 전문가 1명, g)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는 경쟁과 물가 분야 전문가 1명, h) 정보의 공공확산 영역에서의 전문가 1명

2) 예비위원

각 위원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임명되는 예비위원을 임명하여 둔다(동법 제23조 제2항¹⁶¹)

3) 구성에서의 성별 차이의 제한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들에 있어서 남성 위원, 여성 위원 간에 1명의 차이를 넘지 않도록 구성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은 이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의 임명 또는 제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각각은 그 임명 또는 제청 후 한편으로는 정회원 전체 수에서 다른

160)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1항.

161)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2항.

한편으로는 정회원 수에서 여성위원 수와 남성위원 수 간에 차이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동조 제3항162)

4) 위원의 임명, 임기 등

위원들은 수상의 명령으로 임명되고 그 임기는 3년인데 의원으로서 임명된 위원들, 즉 위 b), c)에 열거된 위원은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동안 재임하여(즉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인 위원은 그들의 의원으로서의 임기동안 재임하여) 예외가 된다. 연임도 가능한데 다만, 위에서 언급한(즉 위 (3)에서 언급한 동법 동조 제3항의 성별 차이 조건)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연임될 수 있다(동법 동조 제4항163).

5) 권리수호관, 정부위원의 참여

위원회에는 그 외에 권리수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 또는 그의 대리자가 있는데 그들은 투표권·의결권이 없는 발언권(voix consultative)을 가진다(동법 동조 제5항164). 위원회에 수상에 의해 지명되는 정부위원이 동법 제18조와 제22조의 적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외에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다(동법 동조 제6항165).

2. 권한과 운영

(1) 권 한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정보와 공공기록물의 접근의 자유의 존중에 대한 감독과 이 법의 이 편과 유산법전 제1권의 제1편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 공적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이 법의 제2장의 적용을

162)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3항.

163)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4항.

164)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5항.

165)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6항.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다(동법 제20조 제2항¹⁶⁶). 위원회는 이 법 제1장의 적용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당한, 그리고 유산법전 제L.211-4조 c에 규정된 문서와 의회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리된 기록(actes)과 문서를 제외하고 공공 기록물의 열람이나 공개하는 것을 거부당한, 또는 공적 정보의 재활용에 관해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청구 받으면 이에 대해 의견(des avis)을 제시한다(동법 동조 제3항¹⁶⁷). 바로 이 의견제시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하기 위한 사전적 의무라고 규정하여(동법 동조 제4항¹⁶⁸)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위원회에의 이의청구는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강제적(필요적, 의무적) 전치요건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 즉 민법전 제2449조, 알사스 - 모젤(Alsace-Moselle)의 민법전 제79조,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L. 2121-26, L. 3121-17, L. 4132-16, L. 5211-46, L. 5421-5, L. 5621-9 et L. 5721-6조, 선거법전(code électoral) 제L. 28, L. 68 et LO 179조, 선거법전의 대리등록에 관한 규정들 등(동법 제21조 A 1° sowl 4°. 이 외에도 동법 제21조 A에 5°부터 21°까지 여러 법전의 규정들이 열거되어 있음)에 속하는 행정정보공개와 공적 정보의 재활용 문제, 원자력 영역에서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 제19조에 정해진 조건 내에서 원자력 기반 시설의 개발자들과 방사성 물질 운송 책임자들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 Bas-Rhin, Haut-Rhin, Moselle의 도 내에 프랑스 민사 입법을 발효하는 1924년 6월 1일 법률 제2편의 제3장에 속하는 공적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심리할 권한도 가진다(동법 제21조¹⁶⁹).

166)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0-1조 2항.

167)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2-1조 1항.

168)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2-1조 2항.

169)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2-2조.

위원회는 제재권한도 가진다. 즉 위원회는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청에 의해 이의제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심절차로 제2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제18조에 규정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동법 제22조170).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출범초기에는 1979년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와 1978년 정보공개법의 문제, 그리고 공공 기록물에 관한 1979년 법률의 문제에 관한 관할 구획이 논의되었으나 2000년 법률개정으로 정보 공개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 귀속되었다.¹⁷¹⁾

위원회는 권한부재의 각하결정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도 있고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법인으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대한 사안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권한이 없음을 스스로 선언하는(*se déclarer incompétent*), 권한부재의 결정을 하게 된다.¹⁷²⁾

(2) 운 영

최고행정법원에서 제정되는 명령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규정 하는데 특히 위원회가 한정된 소위원회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 한다(동법 동조 제8항¹⁷³⁾)

표결결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선투표권을 가진다 (동법 동조 제7항¹⁷⁴⁾)

3. 실적과 평가

(1) 실 적

정보공개위원회가 연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의 최근 실적통계들을

170)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2-3조.

171) G. Dupuis/M.-J. Guédon/P.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0^eéd., Sirey, 2007, 74면.

172) Ch. Debbasch/P. Colin, *Droit administratif*, 7^eéd., Dalloz, 2004, 443면.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인의 경우 공개대상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는 경우만이다.

173)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8항.

174)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41-1조 7항.

참조하면 그 실적의 양이나 질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매년의 통계는 정보공개위원회 사이트에는 2010년, 2012년, 2013년의 연차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다.¹⁷⁵⁾ 아래 통계는 그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의 작성과 소개는 변화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¹⁷⁶⁾ 아래에 항목을 나누어 소개한다.

1) 신청건수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의견제시, 자문, 제재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2010-2013년도 정보공개위원회 신청건수¹⁷⁷⁾

연 도	2010년	2012년	2013년
총건수	4,843	4,749	5,486
의견제시요구건	4,666	4,569	5,306
자문건	177	180	178
제재건			2

2) 사안주제별

아래의 표를 보면 2010년, 2012년에 도시계획, 공무원제도, 사회보장에 관한 사안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주제별 분류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175)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176) 2011년의 통계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사이트에 올라있는 pdf파일이 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에 산입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177)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표 6] 2010년도 정보공개위원회 청구사안¹⁷⁸⁾

주제별	비율 (%)
도시계획	14,1
공무원제도	21,2
사회보장사안(의료문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13,0
계약과 시장	7,9
공공질서	5,7
경제와 재정(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4,4
지방생활	6,5
환경	6,9

[표 7] 2012년도 정보공개위원회 청구사안¹⁷⁹⁾

주제별	비율 (%)
도시계획	16,8
공무원제도	15,1
사회보장사안(의료문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13,8
계약과 시장	6,5
공공질서	9,0
산업	5,1
지방생활	3,7
환경	6,5

178)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179)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3) 신청인과 조회방식

[표 8] 2010-2012 정보공개위원회 신청인¹⁸⁰⁾

신청인	연도별 비율 (%)	
	2010년	2012년
자연인	66,4	65,2
법인	32,9	34,2

2012년의 경우에 문의(조회) 건수도 수록되어 있는데 서신과 이메일에 의한 문의(조회)건수는 6,040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2013년의 경우에 신청인 분류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고 문의(조회) 방식별 건수는 나타나 있는데 아래와 같다.

[표 9] 2013년도 정보공개위원회 문의방식¹⁸¹⁾

서신과 이메일	5,620건
전 화	35건(하루당 건수)

4) 신청대상행정청

2010년, 2012년의 신청대상행정청 유형별 통계는 아래와 같다.

180)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181)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표 10] 2010-2012 정보공개위원회 신청대상 행정청¹⁸²⁾

신청대상행정청	연도별 비율 (%)	
	2010년	2012년
시(市)	32,37	33,8
국가	29,15	32,5
지방공공단체	20,45	16,0

5)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공개(인용), 취하·소실·부존재각하, 기각 등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1] 2010-2013년 정보공개위원회 신청 처리결과¹⁸³⁾

처리결과	연도별 비율 (%)		
	2010년	2012년	2013년
공개(인용)	46,0	45,3	57,4
취하, 소실 또는 부존재의 각하, 기공개, 무권한, 불가 수리 등	33,4	31,4	취하 9,2* 기공개 또는 부존재 23 무권한 4,9 불가수리 5,4
기각	9,2	10,4	9,3

* 2013년의 경우 처리건수 전체의 비율에서 취하건수를 빼어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음.

182)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183)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6) 위원회 의견의 수용 비율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의 수용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10년, 2012년의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2010-2012년 정보공개위원회 의견 수용률¹⁸⁴⁾

의견수용여부	연도별 비율 (%)	
	2010년*	2012년**
수 용	58,2	77,8
거 부	6,8	22,2
무응답	36,1	36,5

* 2010년의 통계수치가 전체 100%를 상회함. 각주에서 밝혔듯이 이 수치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사이트에 근거함.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 2012년의 경우 ‘수용’과 ‘거부’는 응답수 100%내의 각 비율임.

7) 처리일수의 평균

[표 13] 2010-2013 정보공개위원회 처리평균일수¹⁸⁵⁾

연도	2010년	2012년	2013년
처리평균일수	36,8일	39,0일	40,3일

8) 정보공개책임관의 수

정보공개책임관의 수는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이다.

184)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185)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표 14] 2010-2013 정보공개책임관의 수¹⁸⁶⁾

연 도	2010년	2012년	2013년
정보공개책임관의 수	1,520명(2011년 3월 1일 현재)	1,598	1,597

(2) 평가 -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위원회가 35년(197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성과는 긍정적이다. 위원회가 행한 의견제시는 행정청이 이를 따르는 경향이고 매우 빈번히 행정법원에서도 채택되어졌다. 게다가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행한 해석은 비록 잔존하는 법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입법자의 의도에 맞게 법률의 확대해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⁸⁷⁾ 지난 20여년간 연 평균 5000건 정도 신청되어 사건이 적지 않은데 그 중 10% 정도만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고 있고 소송의 70%정도가 위원회가 공개의견이었음에도 행정청이 공개하지 않아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위원회의 소송의 사전예방적 개입기능(intervention précontentieuse)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¹⁸⁸⁾

행정청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 따르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배척할 수도 있는 자문적인 위원회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따르는 경향이다.¹⁸⁹⁾

186) http://www.cada.fr/IMG/pdf/chiffres_cles_2010.pdf 2015. 12. 23 최종방문 ;
http://www.cada.fr/rapports-d-activite%2c4911e2.html?debut_pub=10#pagination_pub 참조.
2015. 12. 23 최종방문.

187) 이런 평가로, 위 Rapport, 73면.

188) 이런 평가로, 위 Rapport, 74면.

189) 2013년 Rapport, 7면.

제 2 절 정보공개책임관

1. 서 설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에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적인 책임관을 두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문제들을 담당하는 책임관(une personne responsable de l'accès aux documents et des questions relatives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이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약하여 부름. 프랑스에서는 약자를 따서 'Prada'라고 약칭하기도 함)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24조¹⁹⁰). 그 임명조건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Conseil d'Etat에서 제정되는 명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동조). 그 명령이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의 적용으로 제정된, 행정정보의 접근의 자유와 공공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2005년 12월 제2005-1755호 명령'(Décret n°2005-1755 du 30 décembre 2005 relatif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이다.

정보공개책임관제도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각 행정청이 답변을 위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예를 들어 공개청구를 받은 해당 행정청이 답변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이 낮은 점이 지적되어 입법으로 의무화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보공개책임관은 국민과 정보공개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가 의미있게하고 행정청 내에서 투명성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개청구에 대한 더욱 적절한 답을 부여

190)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L330-1조.

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이들 정보공개책임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2011년, 2012년에 진력한 바 있다.¹⁹¹⁾

2. 임명대상 단체와 임명권자, 공개원칙 등

(1) 임명대상 단체와 임명권자

장관과 도지사는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위하여 행정문서의 접근과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임명권자를 장관과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동 명령 제42조 제1항).

그 외 만 명 이상의 시나 도, 레지옹(région), 코르시카 지방자치단체, 2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국가나 지방의 공공단체들, 1만명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들 간의 협력을 위한 공공단체들. 적어도 2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그 외 공법상, 사법상 법인들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동 명령 동조 제2항).

(2) 공 표

그 임명은 15일 이내 정보공개위원회와 대중들에 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3. 정보책임관의 권한과 임무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한 승인, 있을 수 있는 이의제기와 그 심리를 감독하고 행정청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연결을 확보하며 정보공개청구와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의

191) Rapport Sénat, 79면.

통계를 작성하는 책임을 진다(동법 제44조).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책임관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¹⁹²⁾

(1) 청구와 답변의 용이성 제고

정보책임관의 개입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쉽게 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보다 나은 내용이 담긴 정보를 제고할 수 있게 한다. 청구내용을 잘 정리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2) 법적 전문성의 제고

정보공개책임관이 그 문서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서 그 행정청에 자문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통계의 작성을 수행하며 정보공개를 최대한 짧은 시간 에 공개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행정정보공개위원회와 연결 임무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청과 정보공개위원회 간의 정보의 전달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데 판례의 전파, 의견제시나 자문의 요구에 대한 심리를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정보공개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떤 의견제시요구가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되는 행정청의 정보공개책임관에게 그 제시요구를 전달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이처럼 그 청구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조화적인(coordonnée) 역할을 하고 그리하여 행정청이 정보공개위원회에 해야 할 답변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192) Guide, 13-17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청의 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견제시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위원회는 의견제시를 한 달 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특히 짧으므로 의견제시청구가 들어와서 해당 행정청의 답변을 요구하면 만족스럽게 고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은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그 답변의 제시에 정보공개책임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 4 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제 1 절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

1. 긍정적 측면

- (1) 공개대상인 행정정보의 범위가 정보공개법의 개정들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제시례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 (2) 공개대상기관이 일반행정상의 행정청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사법인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 (3) 공개청구에 있어서 사적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점 우리 실무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 (4) 공개의 방식이 열람, 서면 외에도 디지털 저장매체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공개방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 (5) 정보공개위원회가 독립위원회로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6)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제시요구 사건이 적지 않고 그 의견제시를 잘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한다.
- (7) 행정정보공개 및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위한 책임관을 두어 공개제도의 확산과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2. 개선 내지 새 방안 모색 대상의 점

- (1)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오해 : 공개대상인데도 행정내부적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예들이 있다.
- (2) 공개대상기관인지에 대한 오해 : 프랑스에서는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사적 단체가 자신이 공개대상기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 재정이나 조직의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수행 단체임에도 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¹⁹³⁾
- (3) 행정청의 불성실함, 위축감, 심지어 악의로 거부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¹⁹⁴⁾
- (4)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 공개제도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 (5)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행정법원의 부하가 많아 그 공개를 두고 행정청의 거부가 있었던 정보의 경우 그 공개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제 2 절 우리법에의 시사점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도와 그 실무경험으로부터 우리 법과 실무에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1) 디지털시대의 정보공개법 체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정보가 행정기관의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된다고는

193) Guide, 4면.

194) 앞의 Rapport Séna, 81면 이하 참조.

하지만, 그 질이나 실질적인 제공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이 점 프랑스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2) 공개의무를 지는 기관으로 프랑스법제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적 단체로 확대되어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외에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있으나 프랑스의 사고는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이 공공 서비스 임무성이라는 질적 기준을 정보공개법 자체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청구를 하는 시민의 적극성에 기대지 말고 행정기관 자체가 보다 성실한 공개자세가 필요하고 정보의 활용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 (4) 프랑스의 경우 환경에 대한 정보의 경우 과정 중의 정보도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 부분은 한번 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에 옮겨지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과정 중의 정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5) 의료에 관한 정보 문제에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 영역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 사실상 의료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문제만으로도 보는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외 의학 연구를 제공 등에 대해서 현재의 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의료관계법 등에서의 규정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6)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공개법제의 적절한 조화가 프랑스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주제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면서도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정보보호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 (7) 공개 여부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 즉 독립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정보공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 (8) 위원회가 독립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프랑스의 예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청이 잘 따르고 소송으로 까지 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 (9) 공공 정보에 대한 재활용의 문제에 대해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0) 각 행정청별로 ‘정보공개책임관’을 두게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법률적 자문 등을 하도록 하여 권리보호에 더 충실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5] 한국과 프랑스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人)
공개 의무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 기관 ④ 각급 학교 ⑤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을

제 4 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구 분	한 국	프랑스
	<p>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p> <p>⑦ 사회복지법인</p> <p>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p>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보존장소, 형식, 매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에는 특히 소송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 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부문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리고 결정이 해당된다.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재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재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 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2013-907 법률 (이해충돌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제 20조가 규정한 공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의 임무수행

구 분	한 국	프 랑 스
비공개 정보	<p>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p> <p>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p> <p>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p> <p>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고 있는 문서, 공중보건법전 제L.6113-6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전의 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의 문서), 2001년 사회보장제정에 관한 2000년12월 23일 제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정인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제공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p>
정보 공개 절차	<p>•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p> <p>•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p> <p>•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함.</p>	<p>• 서면(이메일도 가능)</p> <p>- 청구대상 정보를 정확히 적시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반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야 할 의무 없음.</p>

제 4 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구 분		한 국	프랑스
정보 공개 절차	공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행정청에 의해 활용되는 저장매체에 동일한 또는 그 저장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러한 재생산의 비용을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교부하는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처리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분 공개 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청구가 본 제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하지 않은 기술(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가리거나 분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구 분	한 국	프 랑 스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를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침묵은 묵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는 1개월이 기한이다.
사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법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묵시적 결정 또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
공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간주규정 없음(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를 청구를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침묵은 묵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 4 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구 분		한 국	프랑스
			제1항). 의료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는 1개월이 기한이다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에서의 열람은 무료이다. 종이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복사 등을 통한 공개의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복사비용을 청구인에 부담지울 수 있으나 원 비용을 상회할 수는 없다. 최대 비용(le tarif maximum)은 페이지 당 0,18유로, 디스크 1,83유로, 시디롬 2,75유로.
	불복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 (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능(법 제19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의 거부의 통지가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한 달을 넘긴 경우에는 그 통지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간 정보공개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 17조 제2항).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해당 행정청은 위원회에 두 달 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가능하다. 소송은 6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통지 및 행정쟁송 (법 제2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다음의 행정정보는 이해관계인에게만 공개가능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공개가 사생활의 보호, 또는 의료비밀 그리고 상업적·산업적 기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구 분	한 국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하거나 쉽게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정보 ; - 행위의 공표가 당해 주체(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그 행위를 드러내는 정보 ; <p>의료적 성격을 갖는 정보는 공중보건법전 제L1111-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계인에게 그의 선택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의사를 통해 공개된다.</p>

제 5 장 결 론

프랑스 법제는 일찍이 1978년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가 짧지 않다. 프랑스는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2000년과 2005년의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한 변화 중에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레나 행정법원 판례로 형성된 법리가 정보공개법에 반영된 것이 있다.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자 변모되기도 하였다. 행정문서의 개념정의부터 그 공개방식 등에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프랑스에서의 정보공개법제에서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법적 이슈이다.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한 사안도 이에 관해서 많고 많은 심의의견례들이 축적되었다. 이에 대한 참조가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에서 특별히 강조하여야 할 점은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점점 더 권한이 확대되고 있고 동 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주로 행하나 그 의견이 비교적 잘 수용되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경험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의 구체절차를 밟는데 프랑스의 경우 독립된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립된 전문화된 위원회에 중심적 구제기능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한다.

공공정보의 재활용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분야의 개발 문제로서 프랑스의 법제를 참조하고 특히 그동안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호,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관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7권 제1호, 2015
- 김배원, “정보공개소송과 사법심사 : Vaughn Index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29집 제2호, 2001
- 김봉철,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연구 -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의미와 공공기관의 정보 생성, 복원, 가공의무를 중심으로 -”, 『법조』, 법조협회, 제63권 제6호, 2014
- 김성배, “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밀보호의 문제”,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4권, 2010
- 김승태, “정부3.0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제도 평가”,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제16호, 2014
-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29집 제3호, 2001
-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5집 제2호, 2006
- 김춘환, “전자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5집, 2002
-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33권, 2009
- 이상해, “국가의 능동적 정보제공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4권 제1호, 2013

참 고 문 헌

- 이서열,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향후 개선과제”, 『외법논집』,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0집, 2008
- 이순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대한 판례의 검토”, 『토지공법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45집, 2009
- 이용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
학회, 제5권 제1호, 2004
- 이인호, “한국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5집, 제4호, 2007
- 임 현·정다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토지
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9집, 2015
- 정필운, “공공기관은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제16권 제1호,
2010
- 정하명, “전자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공법학연구』, 한국비교
공법학회, 제10권 제3호, 2009
- 정하명,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42권 제3호, 2014
- 지희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경희법학』, 경희법학연구소, 제49권 제4호, 2014
- 채우석,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0집
제4호, 2002
- A. Chaminade,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aux archives
publiques, La Semaine juridique, 2009

- B. Lassère/ W. Lenoir/B. Stirn, *Transparence administrative*, PUF, 1987
- B. Genevois, *RFDA*, 1989
- Ch. Debbasch/P. Colin, *Droit administratif*, 7^{éd.}, Dalloz, 2004
- Guy Braibant/B. Stirn,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7^{éd.}, Dalloz, 2005
- G. Dupuis/M.-J. Guédon/P.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0^{éd.}, Sirey, 2007
- Jacques Robert, Jean Duffar, *Droits de l'homme et libertés fondamentales*, 8^{éd.}, Montchrestien, 2009
- J. Fialaire/E. Mondielli/A. Graboy-Grobescio,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2^{éd.}, Ellips, 2012
- J. Morand-Deville, *Droit administratif*, 13^{e éd.}, LGDJ, 2013
- J. Waline, *Droit administratif*, 25^{e éd.}, Dalloz, 2014
- J.-P. Costa,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RFSA, 1996
- M.-C. M., *L'affichage du compte rendu du conseil municipal ne relève pa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JDA 2010
- M.-Ch. de Montecler, *Les factures des sondages de l'Elysée sont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communicables*, AJDA, 2012
- Philippe Foillard, *Droit administratif*, 3^{e éd.}, Larcier, 2014
-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mission commune d'information sur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aux données publiques, par Mme Corinne Bouchoux(Sénatrice), no 589, Sénat, enregistré à la Présidence du Sénat le 5 juin 2014
- R. Letteron, *Libertés publiques*, 12^{éd.}, Dalloz, 2012

참 고 문 헌

S. Boissard, Le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depuis l'intervention de la loi du 12 avril 2000

S. Brondel, communication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et secret des délibérations du gouvernement, AJDA, 2009

_____, Transmission de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ogiciel utilisé, AJDA, 2010

Y. Guana/L. Lалуque, La réforme du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JDA, 2000

CAA Nantes, 30 juillet 2003, Association « L'arbre au milieu »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Guide d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2007

avis n° 19940702 du 31 mars 1994

avis n° 19941734 du 21 juillet 1994

avis n° 19971796 du 29 mai 1997

avis n° 19982490 du 10 septembre 1998

avis n° 20000168 du 6 janvier 2000

avis n° 20003857 du 5 octobre 2000

avis n° 20004094 du 7 décembre 2000

avis n° 20010481 du 8 février 2001

avis n° 20010580 du 8 février 2001

avis n° 20010694 du 22 février 2001

- avis n° 20011283 du 22 mars 2001
- avis n° 20012061 du 14 juin 2001
- avis n° 20013074 du 30 août 2001
- avis n° 20014471 du 6 décembre 2001
- avis n° 20014187 du 20 décembre 2001
- avis n° 20021494 du 16 mai 2002
- avis n° 20022698 du 27 juin 2002
- avis n° 20023331 du 5 septembre 2002
- avis n° 20023955 du 3 octobre 2002
- avis n° 20023721 du 5 décembre 2002
- avis n° 20030330 du 23 janvier 2003
- avis n° 20032193 du 22 mai 2003
- avis n° 20033142 du 28 août 2003
- avis n° 20034009 du 9 octobre 2003
- avis n° 20040176 du 8 janvier 2004
- avis n° 20040964 du 4 mars 2004
- avis n° 20041777 du 29 avril 2004
- avis n° 20043151 du 22 juillet 2004
- avis n° 20044622 du 4 novembre 2004
- avis n° 20045456 du 16 décembre 2004
- avis n° 20053313 du 25 août 2005

참 고 문 헌

- avis n° 20053874 du 22 septembre 2005
- avis n° 20054767 du 1er décembre 2005
- avis n° 20061286 du 16 mars 2006
- avis n° 20061720 du 27 avril 2006
- avis n° 20064236 du 28 septembre 2006
- avis n° 20064640 du 26 octobre 2006
- avis n° 20065559 du 11 janvier 2007
- avis n° 20070320 du 25 janvier 2007
- avis n° 20071417 du 5 avril 2007
- avis n° 20072197 du 7 juin 2007
- avis n° 20072239 du 7 juin 2007
- avis n° 20072905 du 26 juillet 2007
- avis n° 20073037 du 13 septembre 2007
- avis n° 20073309 du 13 septembre 2007
- avis n° 20074131 du 25 octobre 2007
- avis n° 20074232 du 8 novembre 2007
- avis n° 20074444 du 22 novembre 2007
- avis n° 20074470 du 22 novembre 2007
- avis n° 20074609 du 6 décembre 2007
- avis n° 20074824 du 20 décembre 2007
- avis n° 20080072 du 10 janvier 2008

avis n° 20080635 du 7 février 2008
avis n° 20080843 du 21 février 2008
avis n° 20074963 du 21 février 2008
avis n° 20081250 du 20 mars 2008
avis n° 20084435 du 27 novembre 2008
avis n° 20090056 du 15 janvier 2009
avis n° 20090087 du 15 janvier 2009
avis n° 2009060- du 6 février 2009
avis n° 20090711 du 26 février 2009
avis n° 20090869 du 19 mars 2009
avis n° 20091015 du 2 avril 2009
avis n° 20091147 du 30 avril 2009
avis n° 20091296 du 16 avril 2009
avis n° 20091409 du 30 avril 2009
avis n° 20102409 du 17 juin 2010

CEDH, 2 Sect., 18 nov. 2003

CE, Sect., 19 févr. 1982, Dame Commaret

CE, 24 janvier 1983, Bertin

CE, 27 juillet 1984, Association SOS Défense, pour les juridictions
judiciaires

CE, 26 septembre 1986, Ville de Metz

참 고 문 헌

CE, 13 avril 1988,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emploi c/
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régionaux de fonctionnaires
des conseils de prud'hommes

CE, 21 juillet 1989, Association SOS Défense et Bertin

CE, 17 février 1997, ANAFE

CE, 31 mars 1999, El Fourti

CE 29 avril 2002, Ullmann

CE, 25 mai 2005, Association Reporters sans frontières

CE 20 février 2008, Ligue de Normandie de Karaté

CE 7 juillet 2010, Commune de Mailleroncourt Saint-Pancras, req.
no316668

CE 17 février 2010, M. Fromentin, no289389

CE, 17 avr., 2013

CE, 22 février 2013, Fédération chrétienne des témoins de Jéhovah de
France, no 337987

CE 15 mai 2009, Minist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c/ M. Colibert, no307292

conseil n° 20011270 du 22 mars 2001

conseil n° 20012282 du 14 juin 2001

conseil n° 20021724 du 25 avril 2002

conseil n° 20031467 du 27 mars 2003

conseil n° 20050872 du 17 février 2005

conseil n° 20051689 du 14 avril 2005

conseil n° 20055093 du 15 décembre 2005

conseil n° 20060649 du 2 février 2006

conseil n° 20060734 du 16 février 2006

conseil n° 20061284 du 8 juin 2006

conseil n° 20065405 du 21 décembre 2006

conseil n° 20083995 du 23 octobre 2008

conseil n° 20091439 du 14 mai 2009

décret n° 62-921 du 3 août 1962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o89-260 DC du 28 juill. 1989, Loi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u marché financier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9-580 DC du 10 juin 2009,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TA Bordeaux, 20 octobre 1988, Synd. gén. personnel CGT CHR Bordeaux

TA Bordeaux, 2 mai 2007, M. A

TA Paris, 9 février 2007, M. B.

TA Paris, 17 février 2012, M. Avrillier

TC, 17 juin 1991, Mme M

부 록

부록 1. 프랑스 정보공개법 주요조문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¹⁹⁵⁾

제 3 부 행정정보공개와 공공정보의 재활용

제 1 편 행정정보공개권

제 1 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 1 절 공개권의 범위

제 2 절 공개권의 방식

제 2 장 행정정보의 전파

제 1 절 일반규정

제 2 절 지침과 훈령에 관한 특별규정

제 2 편 공공정보의 재활용

제 3 편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관

제 4 편 정보공개위원회

제 1 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 2 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

제 3 장 정보공개위원회에 적용가능한 절차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의견요청에 적용가능한 절차

제 2 절 처벌선고에 적용가능한 절차

195) 2016년 1월 1일 시행. ‘공중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의 온라인 참조는, <http://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31366350&dateTexte=20160120>. 2015.12.30. 최종방문.

제 3 부 행정정보공개와 공공정보의 재활용

제L300-1조

정보에 관한 모든 인(人)의 권리는 행정정보 공개의 자유에 관한 본 법전의 3부의 제1편, 제3편, 제4편의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제L300-2조

① 본 법전 3부의 제1편, 제3편, 제4편에서 규정하는 행정정보(documents administratifs)란 그 보관 날짜, 장소, 형태, 저장매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외 공법상 사람·법인에 의해 또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적인 사람, 사법인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범주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리된 문서(documents)를 말한다. 그와 같은 문서는 특히 기록, 보고서, 연구보고서, 회의록(속기록), 조서, 통계, 지침, 지시, 회람, 정부의 통첩과 답변, 통신, 의견, 예측, 결정이 해당된다.

② 의회에 의해 생산되거나 취득된 의사록과 정보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제58-1100호 오르도낭스에 의해 규율된다.

제 1 편 행정정보공개권

제 1 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 1 절 공개권의 범위

제L311-1조

제L311-5조 및 제L311-6조의 유보 하에, 제L300-2조에 언급된 기관은, 본 부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를 그 공개를 신청한 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L311-2조

- ① 공개의 권리는 완성된 문서에만 적용된다.
- ② 공개에의 권리는 행정결정이 과정에 있는 한에서는 준비적인 문서 들에는 미치지 않는다(무관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명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권리를 창설하는 하나의 개인적 결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한 경우 그 법률규정이나 명령규정들에 의해 규정된 의견들은 이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 송부되자마자 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어진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전항의 예외로서) 행정청이 수리한 둘 이상 여러 청구들의 비교되는 장점들에 관한 의견들은 그 의견들이 준비 하는 행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한은 공개되지 않는다.
- ④ 정보공개에의 권리는 그 문서가 공적인 전파의 대상이 되는 문서일 경우에는 행사되지 않는다.
-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능한 행정문서를 공적 기록물로 등록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행정문서에의 공개의 권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⑥ 제L300-2조에 규정된 어느 한 행정청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동조가 규정한 다른 어느 한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문서의 공개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그 행정청에 이첩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⑦ 제L300-2조에 규정된 행정청 하나가, 또는 정보공개위원회가 제 L342-1조와 제L342-2조에 규정된 여러 공개제도에 해당되는 청구일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았을 때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 L.213-3조에 의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청(또는 위원회)이 공개제도들 전체에 비추어 직권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⑧ 행정청은 특히 그 회수, 반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하는 성격의 것인지를 보고 청구가 남용된 것일 때에는 남용하는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다.

부 록

제L311-3조

- ① 파일에 나타나는 기명정보에 관련된 컴퓨터,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규정의 유보 하에, 모든 사람은 그에게 반대(대항) 되는 결론이 담긴 행정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 ② 그 결론에 대한 그의 견해가, 그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되는 문서에 반드시 부록에 첨기되어야 한다.
- ③ 위 규정들을 위반한 행정문서의 활용은 금지된다.

제L311-4조

행정정보는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권의 유보 하에 공개된다.

제L311-5조

아래의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들의 의견, 재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재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 회계법원의 문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는 문서들,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2013-907 법률(이해충돌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 번역 잘 할 것) 제20조가 규정한 공적생활투명성최고위원회(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위원회가 자신의 조사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고 있는 문서,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6113-6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들, 같은 법전 제L.1414-3-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종사자(의사)의 인증 이전의 문서들(인증평가 과정에서 의 문서), 2001년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정인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제공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들

2° 그 외에 열람이나 전달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행정문서들 : a) 정부나 집행권에 관련된 관계 책임기관의 심의의 비밀 ; b) 국방에 관한 비밀 ; c) 프랑스의 해외정책의 방침 ; d)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개인의 안전 ; e) 화폐와 공신력(credit public) ; f) 권한있는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재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사전 작용의 전개 ; g) 권한있는 기기관의 업무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과 세관 위반행위의 조사 ; h) 환경법전 제L.124-4조의 유보 하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비밀들

제L311-6조

다음의 행정문서들은 이해관계인에게만 전달될 수 있다.

1° 그 공개가 사생활의 보호, 또는 의료비밀 그리고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영역에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지명된 또는 쉽게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행정문서들

3° 행위의 공표가 그 주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그러한 행위를 드러내는 문서

의료적인 성격의 정보는 공중보건법전 제L.1111-7조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계인에게 그의 선택에 따라 직접적으로든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지정한 의사를 통해서든 전달된다.

제L311-7조

문서에 대한 청구가 제L311-5조 및 제L311-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하지 않은 기술(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가리거나 분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

제L311-8조

이 장에서 말하는 공개불가능한 행정문서는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L.213-1조와 제L.213-2조에서 정하는 기간과 조건하에서

부 록

조회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리고 본조에 규정의 예외로 이 문서들에 대한 조회는 문화유산법전 제L.213-3조에 정해진 조건 하에서 허가될 수 있다.

제 2 절 공개권의 방식

제L311-9조

행정문서공개는 청구인의 선택과 행정청의 기술적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 즉석에서의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

2°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행정청에 의해 활용되는 저장매체에 동일한 또는 그 저장매체와 양립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재생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교부하는 것에 의해 ;

3°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 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 2 장 행정정보의 전파

제 1 절 일반규정

제L312-1조

① 제L300-2조에 규정된 행정기관들은 게다가 그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다른 행정문서들을 공간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다른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전의 제L311-5조 및 제L311-6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기술(記述)이거나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행정적 ·

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담고 있는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의 제13조에 위배됨이 없이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문서는 이러한 기술을 숨기기 위하여나 거기에 지명된 개인들의 식별화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에서만 공개가 가능하다.

제 2 절 지침과 훈령에 관한 특별규정

제L312-2조

- ① 지침, 훈령, 회람과 실정법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의 설명을 담고 있는 장관의 답변은 공표의 대상이다.
- ② 제4편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 이후 제정된 최고행정법원의 데크레가 본 조항의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둔다.

제 2 편 공공정보의 재활용

※ 제2편은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것이나 조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이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의 제2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 예외).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

제2장 : 공적 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

제10조

- ①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청들에 의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문서들 안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문서가 생산되었거나 접수되었던 문서들의 필요성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임무와는 다른 임무에 그 활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

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이 재활용의 한계와 조건들은 비록 이 장에 따라 규율되는 행정문서 공개청구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본 장에 의해 규율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장의 적용에 있어서 문서에 담겨진 정보들이 공공 정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

a) 그 전달이 그 정보가 공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외에는, 제1장 또는 다른 법류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를 구성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

b) 또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성격의 공공서비스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청들에 의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경우

c) 또는 지적재산을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경우

③ 제1조에 열거된 행정청들 간에 그들의 공공서비스 임무의 행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정보의 교환은 이 장의 의미를 지니는 재활용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 장의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1조 (폐지)

제12조

행정청의 동의가 없는 한 공공정보의 재활용은 그 정보가 변질되지 않고, 그 의미가 변화되지 않으며 그 출처와 그 정보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날자가 언급된다는 요건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제13조

①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는 관계인이 그 재활용이 동의 하였거나 보유기관이 익명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익명처리가 없더라도 법률 또는 명령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은 개인정보보법(*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① 공공정보는 제3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가 공공서비스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배타적 권리의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적어도 3년마다 정기적인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 ① 공공정보의 재활용에는 수수료 부과될 수 있다.
- ② 재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담고있는 문서를 생산 또는 수령한 행정청은 수수료의 책정을 위해 정보처리비용,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익명처리하기 위한 조치의 비용을 고려한다.
- ③ 행정청은 또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고 수수료 기준에 필요하면 지적 재산권의 비목으로 부분을 포함하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은 수수료가 차별 없이 책정되고 그리고 적절한 계산 가능한 기간 투자의 감가상각에 따라 평가된 총산출이 한편으로 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비용을,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하면 본 조에서 정해진 보상을 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 ④ 공공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들을 생산 또는 수리한 행정청이 상업적 활동 범위 내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다른 작동자들에 대해서 그 행정청 자신에게 부담지게 하는 재활용 비용 보다 더 상회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에 스스로 적용하는 조건들 보다 덜 유리하게 과할 수도 없다.

제16조

- ①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가증을 교부한다.
- ② 이 인가증은 공공정보 재활용 조건을 정한다. 이 조건들은 일반이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비례적으로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조건들은 경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수 없다.
- ③ 이 조에 정해진 조건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행정청은 전형적인 인가를 사전에 부여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이 정보의 재활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 ④ 인가제공이 청구인에게 제시되어지는 요건들은 명령으로 규정된다.

제17조

- ① 공공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행정기관은 정보에 담겨있는 주요 문서 목록을 사용자에게 처분을 맡길 수 있다.
- ② 공공정보의 재활용의 조건과 수수료 총액의 결정에 쓰인 계산의 근거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행정기관에 의해, 공개신청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개된다.

제18조

- ① 공공정보를 재활용하는 모든 인(人)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 시 제III장에서 언급하는 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 ② 제12조의 규정이나 교부된 인가증에서 정하는 재활용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인가증 취득의무의 위반하여 공공정보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였을 때, 벌금의 상한선은 형법전 제131-13조에서 경범죄 5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2조의 규정이나 교부된 인가증에서 정하는 재활용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인가증 취득의무의 위반하여 공공정보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였을 때, 벌금의 액수는 위반(manquement)의 중대성과 위반으로부터 얻은 이득(급부)에 따라 책정된다.
- ④ 제3항에 적용과 관련, 첫 번째 위반인 경우 벌금은 150,000유로를 상회할 수 없다. 처벌이 최종 선고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재위반 시 벌금은 300,000유로를 상회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일 경우, 300,000유로 한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5프로를 상회하지 않는다.
- ⑤ 제III장에서 언급된 위원회는, 벌금 대신 또는 벌금과 별도로, 최대 2년간 위반한 자에게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기간은,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최고 행정법원의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의 비용으로 처벌의 사실을 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본 장의 적용방식은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제 3 편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관

제L330-1조

제L300-2조에서 언급하는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청취 후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에서 정하는 명령에 따라 정보공개와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명한다. 임명의 조건 또한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제 4 편 정보공개위원회

제L340-1조

- ①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행정청이다.
- ② 문화유산법전 제2부의 제1절과 동 법전의 본 부, 그리고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정보와 공공기록에의 접근권 및 공공정보의 재활용과 관련한 1978년 정보공개법제2장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1 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L341-1조

- ① 정보공개위원회는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 1° 최소 판사, 재판장에 상응하는 급의 최고행정법원 소속원 1명, 대법원 판사 1명, 회계법원 판사 1명인데 이들은 현직이거나 명예직에 있는 자들로서 각각 최고행정법원의 부원장, 대법원장, 회계법원장에 의해 지명된다 ;
 - 2° 하원의장에 의해 지명되는 1명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장에 의해 지명되는 상원의원 1명 ;
 - 3° 상원의장에 의해 지명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un élu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1명 ;
 - 4°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현직 또는 명예직 교수 1명 ;
 - 5° 문화재국장(directeur général des patrimoines)이 제청하는 기록물 영역 전문적 인사 1명 ;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의 위원장이 제청하는 개인적 성격 정보의 보호 영역에서의 전문가 1명 ;

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는 경쟁과 물가 분야 전문가 1명 ;

8° 정보의 공공확산 영역에서의 전문가 1명

② 각 위원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임명되는 예비위원을 임명하여 둔다.

③ 본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의 임명 또는 제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각각은 그 임명 또는 제청 후 한편으로는 정회원 전체 수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회원 수에서 여성위원 수와 남성위원 수 간에 차이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들은 수상의 명령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인데 의원으로서 임명된 위원들, 즉 위 2°와 3°에 열거된 위원은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재임하여(즉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인 위원은 그들의 의원으로서의 임기동안 재임하여) 예외가 된다. 연임이 가능하다.

⑤ 위원회에는 그 외에 권리수호관 또는 그의 대리자를 두는데 이들은 투표권·의결권이 없는 발언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에 수상에 의해 지명되는 정부위원은,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 제18조 또는 동 법전 제L342-3조 의 적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다.

⑦ 표결결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선투표권을 가진다.

⑧ 최고행정법원에서 제정되는 명령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규정 하는데 특히 위원회가 한정된 소위원회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

제L342-1조

- ① 정보공개위원회는 문화유산법전 제L211-4조의 c호에서 언급하는 정보 및 의회가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와 의사록 또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하여 불리한 결정을 제외하고, 위원회는 제I장 공공기록물 정보의 열람 또는 공개 거부의 적용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제소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있어 필요전치적 요건이다.

제L342-2

정보공개위원회는 아래의 항목에 관련된 사항을 알 권한이 있다 :

A.- 행정정보에 접근과 다음의 조항에 속하는 공공정보의 재활용 :

1° 민법전 제2449조 ;

2° 알자스-모젤(Alsace-Moselle)의 지역민법전 제79조 ;

3°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반법전 제L. 2121-26조, 제L. 3121-17조, 제L. 4132-16조, 제L. 5211-46조, 제L. 5421-5조, 제L. 5621-9조 및 제L. 5721-6조 ;

4° 선거법전 제L28조, 제L68조와 제LO179조 및 선거법전의 대리등록에 관한 조항 ;

5° - 21° : 생략

B.- 원자력 영역에서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환경법전 제L125-10조 및 제L125-11조에서 정하는 조건 내에서 원자력 기반시설의 개발자들과 방사성 물질 운송 책임자들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

C.- Bas-Rhin, Haut-Rhin, Moselle의 도 내에 프랑스 민사 입법을 발효

부 록

하는 1924년 6월 1일 법률 제2편의 제3장에 속하는 공적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심리할 권한도 가진다.

제L342-3조

정보공개위원회는, 제L300-2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의해 이의제기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심절차로,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제2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3 장 정보공개위원회에 적용가능한 절차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의견요청에 적용가능한 절차

제 2 절 처벌선고에 적용가능한 절차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리(법 제9조 제1항) →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 항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any person)” (5 U.S.C. § 552 (a)(3)(A))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 수형자 포함 	모든 국민	누구나(법 제1조 제1항) 국민에 한정되지 않음	모든 인(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개인(every person)은 이 법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당해 정보가 공개대상 인 정보인 한 외국인을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시청구권자로 ‘누구든지(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 이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청구권자가 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공개 대상 기관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문서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2조) → 모든 개인	•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 (5 U.S.C. § 552(f)(1))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관청, 군기관, 정부법인,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기타 연방정부 행정부의 모든 독립 기관 및 독립 규제위원회 포함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다만 스코틀랜드 지방에 포함된 중앙정부 기구는 2000년 정보자유법 적용대상임. 공공기관의 결정권은 법무장관에게 주어짐.	① 연방의 행정청 이외의 연방기관이나 연방시설 (그들이 공법상의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상 법 제1조 제1항)	•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행하는 사법인	•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방, 주 또는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 규정된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그 입법목적	• 행정기관(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제1항) ① 국가기관 1) 국회와 법원 원이 제외되어 있음. 2) 중앙행정기관(내각부에 설치된 기관,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위원회 등의 기관)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3)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p> <p>④ 각급 학교</p> <p>⑤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p> <p>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p> <p>⑦ 사회복지법인</p> <p>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p>	<p>립적인 기관(연금보안센터 및 농업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p> <p>⑥ 의회의 기관</p> <p>⑦ 스웨덴인들의 자치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p> <p>⑧ 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감 및 명명 또는</p>	<p>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 주(州) 정부 기타 지방 정부는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 사단(위원회, 협의회, 하부-협의회 혹은 다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	<p>3)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른 기관(경찰청, 검찰청 등)</p> <p>4) 회계감사원</p> <p>5) 공내부 및 그 소속기관</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독립행정법인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에 따른 독립행정법인 등</p> <p>1) 각종 독립행정법인</p> <p>2) 국립대학법인</p> <p>3)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p> <p>4) 특수법인(일본중앙경매회)</p>

부 록

구 분	한 국 기관 또는 단체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p> <p>⑨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p> <p>⑩ 북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p>						5) 허가법인 (일본은행)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문서(법 제6조 제1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지에 대한 기재 또는 유사한 기록 ② ③ 및 ④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 제공 또는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부록 포함) ③ 용역 또는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의거한 기타의 계약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U.S.C. § 552(f)(1) 전자적으로 작성,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이 정부 기록 내지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5 U.S.C. § 552(f)(1)(A)) 위 정보를 정 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연방 행정기관 아닌 	공공기관의 모 든 정보 중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면제 대상, 완전 면제, 제한적 면제가 있다. 또한 ‘제한적 면제’에는 ‘불이익 심사’와 ‘분류에 의한 면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방식을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록(법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포크 아일랜드의 기록을 하거나 관련된 것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기관 • 법원(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은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하여 특정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직원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 기록(법 제2조 제2항) - 우리 나라 법 제가 “매체에 기록된 사항”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문서, 전자기록 등의 매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이 있는 경우, 제공에 부수 및 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를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p> <p>④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의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슈,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p>	<p>주체가 당해 연방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 역시 포합됨</p> <p>(5 U.S.C. § 552 (f)(1)(B)).</p>				<p>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및 안보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통계 기타의 의견 ⑥ 의사록 ⑦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⑧ 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망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 ⑨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 ⑩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밀 공문서(법 제24조 제1항 각호) ① 정부 외교통상위원회 의문서, 외부 장관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5 U.S.C. § 552(b)(1)-(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해 비밀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정보 중 ‘완전면제’ 대상에는 다른 정보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정보, 대내 첩보국, 해외첩보국, 정부보안사령부 등의 국가 안보 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3조) 1.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a)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연방군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 보존장소, 형식, 매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문서에는 전자 문서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5조 각호) ①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p> <p>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p> <p>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p>	<p>경제적 협상 관련 문서 및 외부행정 분야의 암호화된 메시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음)</p> <p>② 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 이외의 것</p> <p>①에 규정된 문서, 국제재판소, 국제조사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문서, 외국</p>	<p>지가 특별히 허가되고 대통령령에 의해 실제 적절하게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②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 규칙 및 관계에만 관련된 사항</p> <p>③ 법률에 의해 공개가 면제된 사항</p> <p>④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비닉권이 인정되는 정보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p>	<p>보유한 정보, 법정 기록,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공무원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있음.</p> <p>‘제한적 면제’ 대상에서 ‘불이익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에는 국방, 국내 관계, 국가의 경제적 이익, 감사법집행, 감사</p>	<p>군사적 이익과 그밖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c) 내적인 또는 외적인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d) 제무, 경쟁, 규제, 담 당하는 행정청의 통제 및 감독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에 는 특히 소송 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연구 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 부문서 및 담 번, 교신, 의견, 규정 그 리고 결정이 해당된다.</p>		<p>있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② 법인 그 밖의 단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에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에 규정된 것.</p> <p>③ 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⑧ 공개될 경우	의 당국, 자 연인 또는 법인 과 핀란드 공화국, 시 핀란드 시 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법 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 ③ (i) 범죄수사 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 에 관한 책 임을 지는 당국에 대하 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 (ii) 범죄수사 또	정보 내지 금융정보에 해당 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과 의 소송관 계에 있어 행정 기관 상호간 내지 행정 기관 내부의 각 서 또는 서 신에 해당 되는 사항 ⑥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 하고 명백하 게 침해하게 될 인사 내 지 의료에 관한 정보에	기능, 공무의 효과적 보전과 사업상의 이익 이 있고, '분류' 에 의한 정보에는 공표 예정된 정보, 국가안보, 공 공기관에 의한 공 기능 내용, 정 부 정책 형성, 국왕과의 의사 소통, 환경 정보, 개인정보 가 있음.	e) 재무에 대한 외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f) 금지되어 있 는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g) 진행중인 재판 절차의 진행, 공정한 절차에 대한 당사 자의 권리 또는 행사 법적 수사, 질서위반법				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 의 근로관계 에 손상을 줄 우려 또는 이국 또는 국제기관 등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 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정보 ④ 공개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 의 집행 그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기소여부 결정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작성된 문서 및 소환장 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 ④ 범죄 예방 및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범죄 수사, 수사하는 경찰 및 기타의 당국이 유지하는 기록물,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신원 및 여행할 권리	해당되는 사항 ⑦ 사법(司法) 목적으로 작성된 조사기록 내지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i) 소송절차를 저해함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ii)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iii)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합리적으로 예		상의 수사 및 징계법 상의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경우 a) 국제적 협상이나 b) 행정기관의 협의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밀보호에 관한 법규나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의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⑤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립행정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협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건의 기록, 타인의 신원 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원증명 코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는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기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p>	<p>상되는 경우, (iv)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정부, 외국의 행정기관, 관공서 또는 민간기관 등의 비밀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및 사법당국이 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이거나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p>		<p>하여 규율되는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경제적 거래 또는 사회보장 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연방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뢰에 기초한</p>				<p>시, 공개됨으로써 슬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p> <p>⑥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는 문서</p> <p>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소사건에 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에 관계되는 문서</p> <p>⑦ 사람,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의 보안계획의 실현과 관련이 있거나</p>	<p>장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작성한 기록으로서 공개의 경우 비밀정보원에 의해서만 제공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v) 사법(司法)상의 수사 내지 소추의 지침, 기술이나 절차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공개가 법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p>		<p>행위에 관한 제3자의 이익 이 정보공개청구의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정보 연방회의정보부 (Bundesnachrichtendienst) 및 그 밖의 연방의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보안감사법 (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제10조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 기관에 대한 정보</p>			<p>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서의 의존부에 관한 정보(제8조) 개시 청구에 대하여 당해 개시 청구에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p> <p>⑧ 사건 및 비상사태, 민사방위 및 사관건축사와 관련된 문서</p> <p>⑨ 비밀경찰 및 기타의 당국의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문서</p> <p>⑩ 군사기밀, 군대의 물품, 조직, 위치 및 작전, 국가의 무장방어물 또는 기타의 방어물에 사용된 발명품, 시설, 설비 및 시</p>	<p>예상되는 경우, (vi)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위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p> <p>⑧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된 검 사, 운영 또</p>			<p>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p> <p>1.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결정 또는 임박한 행정청의 조치의 결과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법 제4조)</p> <p>2. 개인관련정보 정보(법 제5조)</p> <p>3.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업무상 비밀 (법 제6조)</p>			<p>관계된 행정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을 만으로도 불 개시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시스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진비 접근이 에 관한 문서</p> <p>①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정책, 소득정책,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한 금융 또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p>	<p>는 상향 관련 보고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p> <p>④ 지질학, 지구 물리학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p>					

부 록

구 분	한 국	핀 란 드	미 국	구 경	해 내	해 외	시 랑 스	자 여	해
		<p>⑫ 금융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감독하는 당국의 제정 범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p> <p>⑬ 국민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 이니셔티브, 운영계획 및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⑭ 멸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p> <p>⑮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p> <p>⑯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p> <p>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의 영업 또는</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 랑스	자 여	패
			<p>직업적인 비 밀에 관한 정보</p> <p>⑱ (i) 국가, 지방 자치단체, 노 동 파트너 또 는 노동쟁의 당 사자로서 기타의 공기 업이 수집하 거나 취득한 정보 (ii) 농 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 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p> <p>⑲ 재판을 준비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 송당사자의</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㉔ 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한 사업에 관한 정보 ㉕ 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적 연구, 기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그 평가를 위한 자료에 관한 문서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해 외	프랑스	자 여	해 외
		<p>⑳ 입학시험 또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p> <p>㉑ 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p> <p>㉒ 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중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㉔ 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규 정	해 내	포 랑 스	자 여	해 외
		<p>⑳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p> <p>㉑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 신감정, 청 소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 사 또는 구 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가능성에 관한</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연구와 관련한 정보</p> <p>Ⓣ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p> <p>Ⓣ 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p>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대 중	배	스	자	패
			<p>징집병의 할 당에 대한 평가, 피고 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p> <p>㉔ 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생과 수험생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 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 자격시험 수험생 내는 학교들 가운</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핀란드 대학입학 자격시험위원회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중재 부서</p> <p>㉔ 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 전 화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모바일 통신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전화 번호 또는</p>						

부록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자여	패업
		기타의 연락 처에 관한 정보 ② 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 로 표현된 관 견해에 관 한 정보, 생 활방식, 자발 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가족생활 기 타 유사한 개 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신 청 방 법 정 보 공 개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한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법 제13조 제1항 3문). • 다만, 기밀문서 등에 대한 접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및 비공개 등 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 •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식별가능할 정도로 합리적 모사 (“reasonably describe”)하면 충분하며, 기록 내지 문서를 특정 하지 않아도 됨(5 U.S.C. § 552(a)(3)(A)(2)(i)) 	서명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공개.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메일로 대체할 수 있음.	특별한 규정 없음(서면, 구두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제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제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호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에 관련된 정보 -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국가안보 혹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내각 문서 - 법의 집행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정보 - 의회 예산사무실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전자신청 가능(일본 총무성령 제39호 제3조) • 양자 모두 ①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및 법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③ 개시 실시

부 록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등을 설명해야 함(법 제13조 제2항).				2013-907 법 물 (이해충돌 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한 공격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등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되고 있는 문서, 공증본 건법전 제L.6113-6조에 규정된 보건 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	- 문서의 공개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 • 조건부 비공개 대상정보 -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	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14조 제2항)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 기관의 특정 업무 -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 사업에 관련된 정보 - 연구에 관련된 정보 - 경제에 관련된 정보
입법					
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 전의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 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 복사 또는 청취되도록 서류를 교부하거나, 사본 또는 출력물을 발행함.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복사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당국의 결정은 전산화한 공공 정보의 경우는 자기 매체 또는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및 사본 교부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5 U.S.C. § 552(a)(2)) • 공개청구 정보 문서 내지 기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가 희망하는 형태와 방법으로 공개 (5 U.S.C. § 552(a)(3)(B)-(C)) • 단, 정보공개 		<p>정보제공(구두, 문서, 전자적 방식. 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3항) 문서의 열람(법 제2조 제2항) 그 밖의 방법 (법 제2조 제2항)</p>	<p>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 2001년 사회보장 제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 특정인 을 위하여 시행 된 서비스제공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로서 청구 - 이 법률의 목적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 - 기관이나 장관이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문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사본교부, 전자적 공개(법 제14조 제1항)
	공 개 방 법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자적 형태의 사본을 발부 하여 제공(법 제16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법 제16조 제3항) 	<p>청구에 대해 문서로 답할 의무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기 위해 별도의 목록 또는 통계 등 형태의 기록이나 문서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 방법 - 기관의 사무직원, 혹은 장관에게 현재 관에 계 현재 전화 번호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 기관 주소로 선불 우편신청 -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부 분 공 개 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가능 -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도 공개하지 아니하고도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 (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허용 (5 U.S.C. § 552(a)(1))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p>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누설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 허용 (법 제7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이메일도 가능) - 청구대상 정보를 정확히 적시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반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 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야 할 의무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열람 및 사본 교부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6조 제1항).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법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거부결정시 ①거부사유, ②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함. ④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함 (법제1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U.S.C. § 552 (a)(4)(A)(i)) •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의 경우 사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5 U.S.C. § 552 (a)(6) (A)(i)) 	요청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것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극적 정보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없음. 3극적 정보관계에서는 문서로 제3자에게 결정 통지(법제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 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 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개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경우 -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 -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와 관계 없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이 삭제된 통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및 일부 공개결정시 그 취지 및 일시, 장소, 개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법제9조 제2항)

구 분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독 일	에 본
		<p>피 랑 스</p> <p>지 않다는 행 조건으로 의해 정청에 의해 저 활용되는 저 동 그 장매체에 또는 그 일한 또는 저장</p>				<p>호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본에 대한 정보공개 의 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된 사본 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장 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 때 -수정의 성질 및 정도 -문서를 수정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청구인이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 을 거부할 것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대한민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청구 및 청구인과의 상의에 비추어) -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특정	프랑스	호주	일본
사 전 공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정책에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하여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일반적 공표규정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 의 경우 이 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5 U.S.C. § 552(a)(6)(A)(i)) 		관련규정 없음	<p>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재산상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 서) 교부하는 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공개시의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사실이라는 근거 - 삭제된 사실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존재하지 않음. 다만 법 제24조에서 “정부는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총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증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이야 함(법 제8조).						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의적,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 개 기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간 주규정 없음 (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 제에 대한 검토, 결정에 대한 다른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14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이 비용 관련 액수, 납부방법, 면제사유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하되,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함. •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상업적 이익 과 무관한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해야 함(5 U.S.C. § 552(a)(4)(A)(iii)) 	<p>신청서가 접수 된 지 20일 이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p>	<p>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별 제 7서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청구가 본 제 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 하지 않은 기술 (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 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분리하거나 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통지 - 청구와 관련 하여 문서공개에 대한 거부 의사 -실무상 거부 사유 제시 - 청구인이 일 정기간 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 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방법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 (법 제10조) • 공개결정 간 주규정은 없음.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p>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것 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비 용 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인 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과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한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고지, 이후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단, 행정기관 		<p>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직무행위 대해 수수료와 경비 징수(법 제10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칙목은 목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 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은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허가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대상자 일반 대중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범인격이 있는 단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6조제1항)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에 따른 불복신청 없이 사법적 구제절차 이용 가능(U.S.C. §552(a)(6)(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절차 (5 U.S.C. §552(a)(4)(B)) 			는 1개월이기는 한이다.	<p>을 가능하게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다룬 로드를 할 수 있는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불복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 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능(법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한 상소(법 제33조) 		<p>신청된 정보의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 최초 이의신청은 해당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그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언제 될 것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신청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함. 내부심사는 공개</p>	<p>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 *정보공개관련 쟁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행정법원법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의 목적 또는 목적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 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에 관한 기관이나 장 관은 개인에게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업무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업무일에는 다음의 요일을 제외한다. 토요일, 일요일이 section 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서의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내 불복신청(법 제 18조, 행정불복심사법 제 45조). 2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 21조, 제13조 제3항) •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 4항에 의하여 불복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가능(법 제21조).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거부 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으로 상급직원에게 말간다. 내부심사는 보통 2~3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복잡한 경우, 특히 공익성심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p> <p>내부심사를 통헤서도 애초의 공개 거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는 이를 정보 관우 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p>					

구	판	국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에	뎬	부	에	스	프	랑	스				
										<p>신청자든 정 고기관이든 정 보판무관이 내 린 결정에 대 해 동의할 수 없다면, 3차 이 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 음. 정보공개심 관소에서 이 3 차 이의신청을 다룸. 정보공개 심판소의 결정 은 최종심급의 판단으로 사법 적 구속력을 가짐.</p>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거부 요청가능 (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 통지 및 행정쟁송 (법 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체에 있어 관련 정보의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함(법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호). 			정보 공개를 배제할 보호가 치있는 이익을 갖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 (법 제8조 제1항) 공개결정의 통지, 결정이 존속력을 발한 때로부터 2주일 이후에야 정보 공개 가능 (법 제8지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비용의 징수의 요건 -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법 제13조), 2주일 이내에 공개거부 요청가능(법 제13조제3항) • 불복신청(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1조)